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인지 시점부터 1심 판결까지의 기간 분석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산 업 위 생 공 학 전 공

임 한 규

HANSUNG
UNIVERSITY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두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인지 시점부터 1심 판결까지의 기간 분석

An Analysis of the Duration from Detection to First-Instance Judg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ases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위생공학전공

임 한 규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두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인지 시점부터 1심 판결까지의 기간 분석

An Analysis of the Duration from Detection to First-Instance Judg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ases

위 논문을 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산 업 위 생 공 학 전 공

임 한 규

HANSUNG UNIVERSITY

임한규의 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윤 주 일 (인)

심 사 위 원 김 민 구 (인)

심 사 위 원 박 두 용 (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인지 시점부터 1심 판결까지의 기간 분석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산 업 위 생 공 학 전 공
임 한 규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관련 제1심 판결서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의 사법처리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인지 시점부터 제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의 차이와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관련 제1심 판결서 2,587건이었으며, 판결서를 대상으로 범죄 인지 시점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의 처리기간을 분석하였다. 판결서에는 범죄 인지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망·부상 사고의 발생일과 감독 실시일 등을 처리기간의 시작 시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처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2,531건의 사건 중 약 50%는 10.5

개월 이내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약 61%는 1년 이내, 94%는 2년 이내에 종결되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부상사고의 처리기간이 가장 길었고, 사망사고와 감독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공소제기 이후부터 제1심 판결까지의 기간은 사건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처리기간의 차이는 주로 사고 발생 이후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망사고 사건의 처리기간은 업종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폭발·파열 사고와 다수 사망사고는 다른 사고유형보다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분석기간 동안 사망사고 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재판 단계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공소제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의 사법처리기간을 판결서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사법처리가 실제 사고조사 및 법령상 수사기간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법처리체계는 신속성과 예방효과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조사와 수사절차를 효율화하고, 사법처리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법처리기간, 제1심 판결, 산업안전보건정책, 산업안전규제정책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제 2 장 연구 대상 및 방법 ····· 4

제 1 절 연구 대상 ····· 4

1) 연구 자료 ····· 4

2) 적용 법령 ····· 5

제 2 절 연구 방법 ····· 6

1) 자료 수집과 정제 ····· 6

2) 분석 변수 ····· 6

3) 분류 기준 ····· 7

4) 분석 방법 ····· 7

제 3 장 연구결과 ····· 9

제 1 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처리기간에 관한 정의 ····· 9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사법처리 절차 ····· 9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사법처리 기간 ····· 12

제 2 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인지 시점부터 1심까지의 기간 ····· 14

1) 2013~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처리기간 ····· 14

2)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 ····· 17
제 3 절 사고유형별 분포 ····· 24
1) 사고유형별 처리기간의 분포 ····· 24
2) 처리가 오래 걸리는 사건 ····· 27
제 4 절 업종별 분포 ····· 30
제 5 절 사건 규모별 분포: 사망자 수 ····· 40
제 6 절 연도별 분포: 시간에 따른 분포의 우측 이동 ····· 45
1) 처리기간 구간 비중의 변화 ····· 45
2) 분위별 처리기간의 이동 ····· 49
3) 처리기간 분포의 이동 ····· 51
4) 선고 건수의 변화와 처리기간의 변화 ····· 53
5) 법원 사건 접수 전후 구간의 변화 ····· 55
제 7 절 처리기간이 짧은 사건(6개월 이내)과 긴 사건(1년 초과)의 구성 ····· 57
제 8 절 종 합 ····· 61

제 4 장 결 론 ····· 64

참 고 문 헌 ····· 67

부 록 ····· 68

ABSTRACT ····· 86

표 목 차

〈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 전체의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14
〈표 2〉 사건유형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18
〈표 3〉 사고유형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25
〈표 4〉 폭발·파열 시기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28
〈표 5〉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30
〈표 6〉 업종별 6개월 이내 종결 비중 (1심 선고연도) ····· 31
〈표 7〉 제조업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33
〈표 8〉 건설업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35
〈표 9〉 그 외 산업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37
〈표 10〉 사망자수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42
〈표 11〉 연도별 처리기간 구간별 비중 ····· 45
〈표 12〉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47
〈표 13〉 분위수별 처리기간 ····· 49
〈표 14〉 떨어짐 사고의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51
〈표 15〉 처리기간 6개월 이내·1년 초과 사건의 사고유형·사망자 수별 구성 ·· 58

그 림 목 차

[그림 1] 전체 사건의 처리기간 누적분포. ····· 16
[그림 2] 전체 사건의 처리기간 분포. ····· 16
[그림 3]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19
[그림 4] 사건 유형별 공소제기 전후 구간의 소요 연차. ····· 21
[그림 5] 사건 유형별 판결 건수의 연도별 추이. ····· 22
[그림 6] 사망사건 처리기간 누적분포. ····· 23
[그림 7] 사망사건 처리기간 분포. ····· 23
[그림 8] 사고유형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24
[그림 9] 폭발·파열 시기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29
[그림 10] 업종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31
[그림 11] 업종별 6개월 이내 1심 종결사건 비중의 연도별 추이. ····· 32
[그림 12] 제조업 처리기간 분포. ····· 34
[그림 13] 제조업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34
[그림 14] 건설업 처리기간 분포. ····· 36
[그림 15] 건설업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36
[그림 16] 그 외 산업 처리기간 분포. ····· 38
[그림 17] 그 외 산업의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38
[그림 18] 사망자 수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43
[그림 19]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의 처리기간 분포. ····· 43
[그림 20] 사망자가 2명인 사건의 처리기간 분포. ····· 44
[그림 21] 사망자가 3명 이상인 사건의 처리기간 분포. ····· 44
[그림 22]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48
[그림 23] 연도별 분위수별 처리기간의 변화. ····· 50
[그림 24] 6개월 이내·1년 초과 종결 사건 비중의 연도별 추이. ····· 50
[그림 25] 떨어짐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 52
[그림 26] 2013년과 2019년 처리기간 구간 비중. ····· 53

[그림 27] 연도별 선고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 ····· 54
[그림 28] 법원 접수 전후 두 구간의 평균 처리기간. ····· 56
[그림 29] 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건과 1년 초과인 사건의 구성 대비. ·· 58
[그림 30] 처리기간 구간별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과 폭발·파열 사건의 비중. ··· 59
[그림 31] 폭발·파열과 그 외 유형의 처리기간 누적분포. ····· 63
[그림 32] 2013년과 2019년 처리기간 누적분포. ····· 63

HANSUNG UNIVERSITY

표 목 차(부록)

〈표 1〉 떨어짐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68
〈표 2〉 물체에 맞음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69
〈표 3〉 끼임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0
〈표 4〉 깔림·뒤집힘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1
〈표 5〉 무너짐·매몰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2
〈표 6〉 부딪힘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3
〈표 7〉 폭발·파열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4
〈표 8〉 감전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5
〈표 9〉 질식·산소결핍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6
〈표 10〉 화재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7
〈표 11〉 역과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8
〈표 12〉 빠짐·익사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79
〈표 13〉 이상온도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80
〈표 14〉 화학물질누출·접촉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81
〈표 15〉 기타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82
〈표 16〉 절단·베임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83
〈표 17〉 미상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84
〈표 18〉 사망자 수별·폭발·파열 여부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 8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정책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과 감독이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사후처벌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표적으로 Mischke 등(2013)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감독과 집행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으나 벌금과 처벌(fines and penalties)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감독과 집행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 작업중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산업재해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형사처벌은 수사, 기소 및 재판 등 장기간의 사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위험요인의 신속한 개선보다는 법적 책임의 공방에 논의의 중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의 재판 끝에 부과되는 처벌의 수준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예방적 억지효과(deterrence)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감독과 집행의 적시성(timeliness)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개입(intervention)에서 적시성이

중요하다면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인지 시점으로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업재해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처벌 수준과 양형, 법리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이진국, 2021; 임철희, 2022; 양성필, 2024). 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인지 시점부터 1심 판단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기간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지된 시점부터 1심 판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그 분포와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산업재해 예방 정책과 입법·사법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개시부터 기소 및 제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처리기간을 분석하여 그 분포와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실무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수사는 근로감독관 등 수사당국이 범죄를 인지한 때에 개시되므로, 수사 개시 시점은 곧 범죄 인지 시점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처리기간의 전반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사망사건, 부상사건, 감독 등 사건으로 나눈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형사사건 판결서 총 2,587건이었으며, 각각의 판결서는 사망사고 관련 사건, 부상사고 관련 사건, 그리고 그 외 감독 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세부 분석은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하였다. 사망사건이 가장 많았고, 판결서에 관련 정보가 비교적 충실히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의 처리기간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지 또는 넓은 범위에 걸쳐 분산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처리기간의 분포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고유형, 업종 및 사건 규모 등에 따른 처리기간의 차이와 분포 특성을 비교하였다. 셋째, 처리기간의 분포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분포가 일정한 경향을 유지하는지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변화가 사건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시기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건과 긴 사건이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처리기간 분포와 그 특성을 실증적으로 기술하고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처리기간의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2 장 연구 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자료로 한다. 판결서는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검색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였다.

검색된 판결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인용·언급되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판결서와, 열람이 제한된 판결서 13건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선고일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인 1심 판결서는 2,587건이다. 한편 2심 판결서는 773건, 3심 판결서는 150건이었다.

판결서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수집할 수 있다. 즉 연도별 판결서 건수에는 실제 사건의 수뿐 아니라 판결서의 수집·공개 범위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수의 수준이나 증감 자체를 산업재해 발생 추이나 수사·재판 부담의 지표로 해석하지 않는다.

수집한 판결서에서 사건번호, 심급, 법원, 선고일, 사고발생일, 적용 법조, 피고인 정보, 재해 정도, 사고유형, 업종, 사망자 수 등의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 자료로 정리하였다. 하나의 형사사건이 여러 심급에 걸쳐 진행된 경우에는 상소심 판결서에 기재된 원심 사건번호를 매개로 각 심급의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한 판결서 가운데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곧 사망사건으로 분석을 한정한다. 부상이나 고용노동부의 감독 등으로 인지된 사건은 형사절차의 출발점과 진행 양상이 사망사건과 다르기 때문이다. 출발점이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분포로 묶어 분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분석 단위는 사고 단위이다. 즉 하나의 1심 판결에 여러 사고가 함께 다루어진 경우에도 사고마다 하나의 사건으로 집계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는 사망사건은 모두 1,859건이며, 처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건은 1,857건이다.

2) 적용 법령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에 선고된 판결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조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전부개정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함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기도 한다.[1] 다만 본 연구는 처리기간의 분포를 분석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법조의 구체적 결합 양상은 다루지 않는다.

HANSUNG UNIVERSITY

1) 「형법」 제268조. 분석 대상 판결에는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이 적용되었으나, 이 개정은 표현을 다듬은 것으로 조문 번호와 죄의 내용은 같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과 정제

수집한 자료에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제하였다.

사고발생일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않아 처리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사망사건이 2건 있었다. 두 사건은 처리기간을 미상으로 표기하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업종은 같은 업종이라도 국문 표기나 분류 부호, 띄어쓰기가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있어 하나의 분류로 통합하였으며, 표본 수가 적은 업종은 '그 외 산업'으로 묶었다. 사고유형은 판결서에 기재된 사고 경위의 표현이 일정하지 않아, 같은 유형을 하나의 분류로 통합하였다.

2) 분석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처리기간이다. 처리기간은 범죄가 인지된 시점부터 1심 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분석 대상인 사망사건은 사고 발생과 거의 동시에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날을 인지 시점으로 보았다. 처리기간은 사고발생일과 1심 선고일의 차이(일)로 산출하였으며, 분포를 살펴볼 때에는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사망사건으로 한정하기 전에 전체 사건의 분포를 확인할 때에는, 부상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날을, 감독 등 사건은 위반 사항이 확인된 감독 시점을 인지 시점으로 보았다.

분석 변수는 네 가지이다. 사건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고유형, 업종, 사건의 규모(사망자 수)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1심 선고연도이다. 사건 유형(사망·부상·감독 등)은 분석 대상을 사망사건으로 한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3) 분류 기준

사건 유형과 분석 변수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건 유형은 '사망'·'부상'·'감독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망'은 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부상'은 사망자 없이 1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며, '감독 등'은 판결서에 사망자도 부상자도 나타나지 않은 사건으로, 대체로 고용노동부의 감독, 신고, 중대산업사고 보고 등으로 인지된 사건이다. 판결서에는 수사가 시작된 계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 유형은 실제 인지 계기가 아니라 판결서에 나타난 재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세 유형 가운데 '사망'으로 분류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사고유형은 판결서에 기재된 사고의 경위에 따라 분류하였다.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매몰, 부딪힘, 폭발·파열, 감전, 질식·산소결핍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한 사건에 둘 이상의 경위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먼저 기재된 유형을 따랐다. 표본 수가 적은 유형은 분포를 함께 제시하되, 분포의 차이를 살펴볼 때에는 표본이 충분한 유형을 중심으로 보았다.

업종은 '건설업'·'제조업'·'그 외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운수·창고업, 환경·폐기물업, 농림어업, 광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업 등 표본 수가 적은 업종은 '그 외 산업'으로 통합하였다.

사건의 규모는 한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1명'·'2명'·'3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사망자 수는 사고 단위로 집계하되, 같은 1심 사건번호로 연결된 각 심급의 판결 기록을 함께 살펴 사망으로 확인된 피해자를 산정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처리기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개월 구간별 사건 수로 집계한 분포와, 특정 기간 안에 종결된 사건의 비중을 처리기간에 따라 나타낸 누적분포를 함께 사용하였다. 누적분포로는 특정 기

간 안에 종결된 비중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구간에서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분석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전체 사건과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 분포를 살펴 분석 대상을 사망사건으로 한정한 다음, 사망사건 전체의 처리기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고유형, 업종, 사건의 규모에 따라 처리기간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어서 1심 선고연도에 따라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처리기간이 짧은 사건(6개월 이내)과 긴 사건(1년 초과)이 각각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을 확인하였다.

처리기간의 분포는 사건 수, 분위수(하위 10%·하위 25%·중위값·상위 25%·상위 10% 지점), 구간별 비중을 함께 제시하여 분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포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정도와, 처리기간이 특히 긴 일부 사건이 두드러지는 양상은 누적분포로 비교하였다. 분포 사이의 차이는 가설검정의 유의성이 아니라, 같은 분위 지점에서 처리기간이 벌어진 정도와, 같은 처리기간 안에 종결된 비중이 벌어진 정도로 판단하였다.

처리기간을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기 전 구간과 접수된 후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원에 접수된 시점은 1심 사건번호에 표기된 접수연도로만 알 수 있으므로, 두 구간의 구분은 연 단위로 하였다.

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처리기간에 관한 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사법처리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수사당국이 범죄를 인지하여야 비로소 사법절차가 시작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수사한다.[2)]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업무상 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3)]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담당 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즉시 재해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4)]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8급·9급 국가공무원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3항. 사업주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 다만 제10조의 위 조문 구조는 2013. 6. 12. 법률 제11882호 개정(2014. 7. 1. 시행)에 따른 것이고, 중대재해 보고 조항은 2016. 10. 28.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같은 조 제2항이었다.

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2016. 3. 30. 고용노동부훈령 제186호로 명칭 변경 전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대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야 할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감독관은 재해 현장을 조사하여 목격자의 진술과 관계 서류를 확보하고,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은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및 관계 서류의 확보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수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훈령이 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범죄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5] 다만 2개월은 훈령상의 처리기한이고, 실제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은 신문과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기한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사고의 경위가 복잡하거나 책임의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 피의자나 참고인이 많은 사건은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근로감독관은 수사를 마치면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둘째,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이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다.[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고소는 대개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하고, 고

재해에 대하여 즉시 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계 서류와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명칭 변경 전 훈령에서는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

5)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분석 대상 기간에 적용되던 훈령(2013. 10. 15. 고용노동부훈령 제102호)부터 현행 훈령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같은 훈령 제30조제1항은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의 처리에 위 처리기간 조항을 준용한다(명칭 변경 전 훈령에서는 제37조제1항).

6)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및 제234조제1항(고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제225조제1항·제2항).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 할 수 있다(제234조제1항).

발은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제3자가 위반 사실을 들어 제기한다.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조사를 마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한다.[7)]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도 수사 기한은 같다. 이들 사건 역시 같은 훈령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실제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건에 따라 2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점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인지한 사건과 같다.[8)]

셋째, 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이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업무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연초에 산재예방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감독과 점검의 대상과 규모가 정해진다. 근로감독관은 정해진 대상과 규모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며, 작업현장의 시설·설비를 직접 점검하여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9)]

감독과 점검은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후의 조치가 다르다.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은 시정 지시 등 행정조치가 우선되어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는 사법처리가 따른다.[10)] 감독과 점검의 비율과 건수는 해당 연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7)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준용 근거는 위의 각주와 같다.

9)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1항(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의 시설·설비와 작업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근거는 이 가운데 '안전·보건점검'이다. 감독의 종류와 절차는 고용노동부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2016. 3. 30. 고용노동부훈령 제186호로 명칭 변경 전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점검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계측기기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10)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반면,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달라지므로, 감독에서 적발되어 인지되는 사건의 수도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다. 범죄가 어떻게 인지되었는지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와 시점이 달라지며, 처리기간을 산정하는 시작점인 인지 시점도 인지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사법처리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사법처리 기간은 수사당국이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사법처리 절차는 통상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당국이 범죄의 가능성을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에 이르는 단계를 거친다. 곧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송치된 때부터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단계마다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사법처리가 종료된다. 각 단계에서 재수사나 보강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가 반복되어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판결서의 분석만으로는 각 단계에서 소요된 기간을 정확히 나누어 파악할 수 없다. 판결서에는 수사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 공소가 언제 제기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판결서에서 재해의 발생 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일시는 판결서의 범죄사실에 재해의 경위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일과 1심 선고일 사이의 기간은 판결서만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시점이 곧 범죄가 인지된 시점인 것은 아니어서, 인지 시점을 무엇으로 볼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망사건은 발생 사실이

착수하게 되어 있다. 명칭 변경 전 훈령에서는 제15조제1항이 감독 결과의 조치를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체 없이 보고되어 사고 발생과 거의 동시에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범죄 인지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사와 조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특정되는 시점은 사고 발생 시점보다 이후이지만, 그 시점은 판결서의 분석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망사건의 인지 시점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보았다.

부상사건은 일부가 사고 직후 수사당국에 인지되지만, 일부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을 계기로 늦게 인지된다. 부상사건에서도 판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뿐이므로 이를 인지 시점으로 보았다. 고소나 고발을 계기로 늦게 인지된 부상사건에서는 인지 시점이 실제보다 이른 시점으로 설정되었을 수 있고, 인지 시점이 이르게 설정된 사건은 처리기간이 실제 사법처리에 소요된 기간보다 길게 산정되었을 수 있다. 감독 등 사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 감독이나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절차가 시작되므로, 감독이나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점을 범죄 인지 시점으로 보았다.

법원의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사건은 상소를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러서야 종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된다.[11] 이에 본 연구는 사법처리 기간을 판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시점 사이의 기간, 즉 범죄가 인지된 시점부터 1심 선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고, 이를 처리기간이라 한다. 상소로 재판이 더 이어진 사건이라도 1심 선고까지의 기간만을 분석하였다.

11) 본 연구가 수집한 판결서를 기준으로 1심 판결이 확인된 사건 2,538건 가운데 상급심 판결이 확인된 사건은 742건(29.2%)이고, 나머지 1,796건(70.8%)은 1심에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본문의 분석 단위인 사고 단위와 달리 1심 사건 단위로 집계한 값이다.

제 2 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인지 시점부터 1심까지의 기간

1) 2013~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처리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지된 시점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1심 판결서는 총 2,58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지 시점을 파악하여 처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판결서는 2,531건이었다. 이들 사건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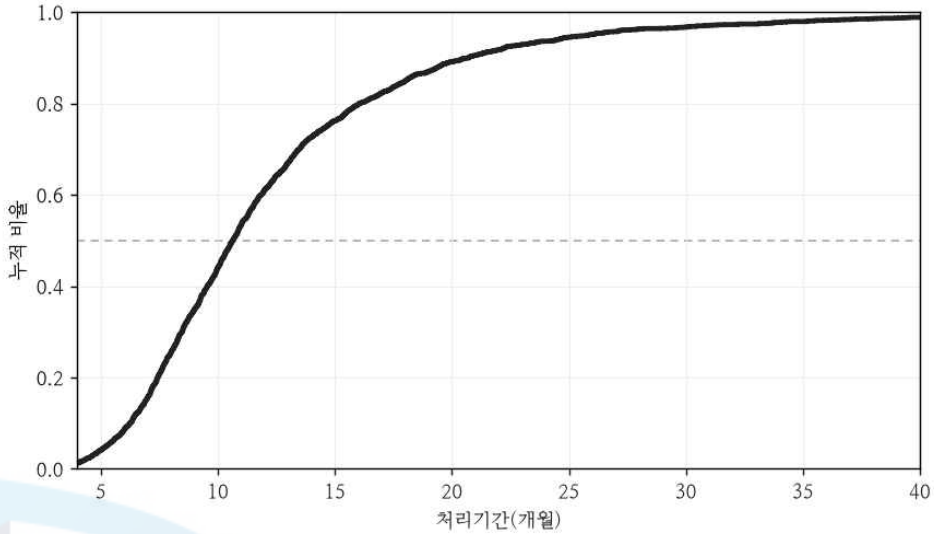
〈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 전체의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처리 건수(비중)	누적 건수(누적 비율, %)
3개월 이하	7	7 (0.3)
4개월	25	32 (1.3)
5개월	72	104 (4.1)
6개월	112	216 (8.5)
7개월	183	399 (15.8)
8개월	245	644 (25.4)
9개월	237	881 (34.8)
10개월	234	1,115 (44.1)
11개월	235	1,350 (53.3)
12개월	197	1,547 (61.1)
13개월	150	1,697 (67.0)
14개월	142	1,839 (72.7)
15개월	91	1,930 (76.3)
16개월	92	2,022 (79.9)
17개월	60	2,082 (82.3)
18개월	66	2,148 (84.9)
1.5~2년	222	2,370 (93.6)
2~3년	116	2,486 (98.2)
3년 이상	45	2,531 (100.0)
기간 미상	56	-
합계	**2,5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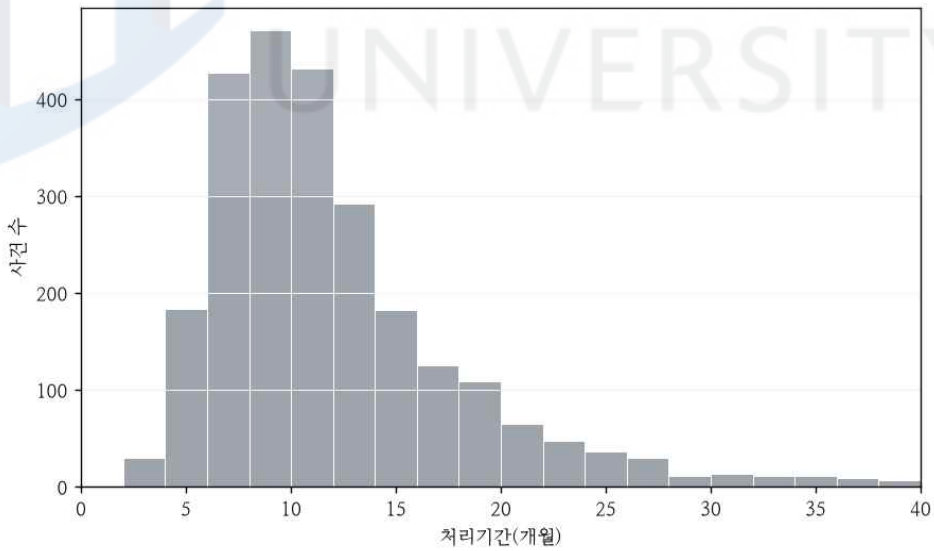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은 짧게는 3개월 이하에서 길게는 3년 이상까지 걸쳐 있었다.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216건으로 약 8.5%였고, 대부분은 7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사건의 4분의 1은 약 8개월 안에, 절반은 약 10.5개월 안에, 4분의 3은 약 14.5개월 안에 종결되었다. 1년을 넘겨 종결된 사건이 약 40%였고, 1년 6개월을 넘긴 사건이 약 15%였으며, 3년을 넘긴 사건은 45건으로 약 1.8%였다.

같은 분포를 처리기간이 짧은 사건부터 차례로 더해 가는 누적분포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종결되는 사건은 6개월경부터 1년경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즉 많은 사건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처리되었다. 전체 사건의 50%가 종결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5개월이었고, 75%가 종결되기까지는 약 14.5개월, 90%가 종결되기까지는 약 21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를 넘겨 종결되는 사건도 일부 있었다. 일부 사건의 처리기간이 긴 양상은 전체 사건의 분포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아니어서, 이어지는 절들에서 사망사건을 사고유형, 업종 및 규모로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같은 자료를 개월 구간별로 나누어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많은 사건이 6개월에서 14개월 사이에 집중되었고, 14개월을 넘는 구간에서는 사건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지만, 일부 사건은 3년 이상 소요되었다.



[그림 1] 전체 사건의 처리기간 누적분포.



[그림 2] 전체 사건의 처리기간 분포.

2)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

제1절에서 살펴본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지되는 계기는 크게 사망사건의 발생, 고소·고발, 감독에서의 적발 세 가지이다. 인지되는 계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서만으로는 범죄의 인지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판결서에 나타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사망사고 사건, 부상사고 사건, 그리고 사고가 없는 사건(대부분 감독으로 인지된 사건)으로 구분하면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유형을 사망사건, 부상사건, 그 외 감독 등 사건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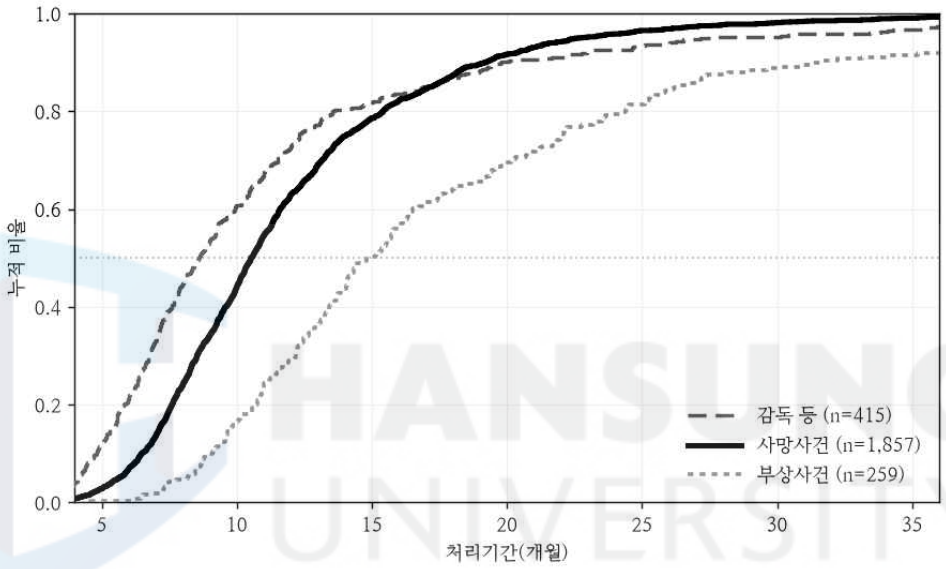
판결서에 나타난 사건 유형에 따라 1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건은 1,859건, 부상사건은 268건, 그 외 감독 등 사건은 460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해의 정도에 따른 사건 유형 구분이 수사가 시작된 계기나 시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상사건 중에는 재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인지한 것이 아니라 고소나 고발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사건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건 발생 시점, 곧 인지 시점으로부터 1심 판결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비중은 감독 등 사건이 21.2%로 가장 높았고, 사망사건은 6.8%, 부상사건은 0.4%에 그쳤다. 1심 판결이 1년 안에 이루어진 경우는 감독 등 사건이 72.8%, 사망사건이 63.0%인 데 비해 부상사건은 29.0%였다. 한편 18개월을 넘긴 경우는 사망사건과 감독 등 사건이 각각 12.7%와 13.0%인 데 비해 부상사건은 35.9%에 이르렀다.

〈표 2〉 사건유형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사망사건		부상사건		감독 등	
	처리 건수	누적 건수(%)	처리 건수	누적 건수(%)	처리 건수	누적 건수(%)
3개월 이하	4	4 (0.2)	0	0 (0.0)	3	3 (0.7)
4개월	11	15 (0.8)	0	0 (0.0)	14	17 (4.1)
5개월	38	53 (2.9)	1	1 (0.4)	33	50 (12.0)
6개월	74	127 (6.8)	0	1 (0.4)	38	88 (21.2)
7개월	129	256 (13.8)	4	5 (1.9)	50	138 (33.3)
8개월	190	446 (24.0)	7	12 (4.6)	48	186 (44.8)
9개월	187	633 (34.1)	14	26 (10.0)	36	222 (53.5)
10개월	187	820 (44.2)	17	43 (16.6)	30	252 (60.7)
11개월	193	1,013 (54.6)	17	60 (23.2)	25	277 (66.7)
12개월	157	1,170 (63.0)	15	75 (29.0)	25	302 (72.8)
13개월	113	1,283 (69.1)	18	93 (35.9)	19	321 (77.3)
14개월	109	1,392 (75.0)	20	113 (43.6)	13	334 (80.5)
15개월	68	1,460 (78.6)	17	130 (50.2)	6	340 (81.9)
16개월	68	1,528 (82.3)	17	147 (56.8)	7	347 (83.6)
17개월	42	1,570 (84.5)	12	159 (61.4)	6	353 (85.1)
18개월	51	1,621 (87.3)	7	166 (64.1)	8	361 (87.0)
1.5~2년	159	1,780 (95.9)	40	206 (79.5)	23	384 (92.5)
2~3년	64	1,844 (99.3)	32	238 (91.9)	20	404 (97.3)
3년 이상	13	1,857 (100)	21	259 (100)	11	415 (100)
기간 미상	2	-	9	-	45	-
합계	**1,859**	-	**268**	-	**460**	-

각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을 누적분포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대체로 감독 등 사건의 처리기간이 가장 짧았고, 부상사건의 처리기간이 가장 길었다. 사건의 50%가 처리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감독 등 사건이 약 9개월, 사망사건이 약 10.5개월, 부상사건이 약 15개월이었다. 다만 처리기간이 18개월을 넘는 사건의 비중은 감독 등 사건(13.0%)과 사망사건(12.7%)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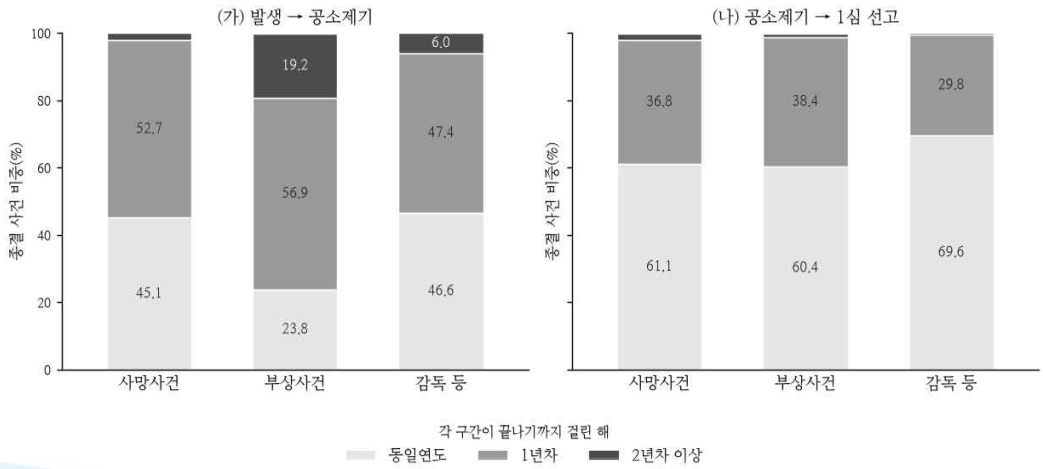
[그림 3]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사건 유형에 따른 처리기간의 차이가 사법처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망사건은 사업주가 재해의 발생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므로, 사고 발생과 거의 동시에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지만, 부상사건은 사고 발생 이후 고소나 고발 등을 계기로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상사건은 사고 발생 시점과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판결서에 나타난 부상사고 발생 시점을 범죄 인지 시점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부상사건의 처리기간은 실제 사법처리에 소요된 기간보다 길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감독 등 사건은 재해가 아니라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실에서 절차가 시작되므로, 감독 시점과 범죄 인지 시점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유형별 차이가 사법처리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소제기 전후, 즉 범죄 인지 시점부터 공소제기까지와 공소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로 나누어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4]는 공소제기 전후 구간을 사건 유형별로 비교한 것이다. 다만 공소제기 일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판결서의 1심 사건번호에 나타난 법원의 접수연도를 공소제기 시점의 기준으로 삼아, 각 구간이 시작된 해 안에 끝났는지 이듬해 이후로 넘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접수연도에 따른 구분은 연 단위의 근사치여서 몇 개월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한 구분은 처리기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의 기간이 사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 공소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은 사건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유형이든 공소가 제기된 해에 60~70%가량이 선고에 이르렀다. 사건 유형별 차이는 인지 시점부터 공소제기까지의 구간에서 나타났다. 사망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연도에 45.1%가 공소제기에 이르렀고, 감독 등 사건도 46.6%로 사망사건과 비슷하였다. 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두 유형에 비해 부상사건은 같은 연도에 공소제기에 이른 비중이 23.8%로 낮고, 이듬해를 넘겨서야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19.2%였다.

따라서 부상사건의 처리기간은 재판 단계가 아니라, 사고가 난 때부터 공소가 제기되기까지의 구간에서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부상사건에는 고소나 고발로 늦게 절차가 시작된 사건이 섞여 있으므로, 사고가 난 날을 출발점으로 삼은 부상사건의 처리기간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었을 수 있다.



[그림 4] 사건 유형별 공소제기 전후 구간의 소요 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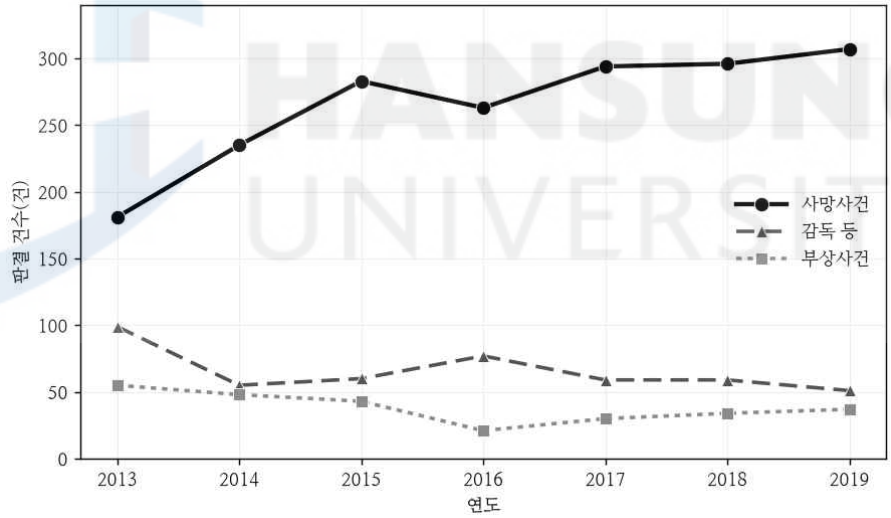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듯이 세 유형의 사건 수도 시간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1심 선고연도를 기준으로 사망사건은 2013년 181건에서 2019년 307건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부상사건은 2013년 55건에서 2016년 21건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30건 내외에서 등락하였다. 감독 등 사건은 2013년 99건에서 이듬해 55건으로 감소하는 등 50건에서 100건 사이에서 등락하였다. 제1절에서 살펴본 대로 감독과 점검의 규모는 해당 연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정해지므로, 감독 등 사건의 수는 재해의 발생 추이와 별개로 변동할 수 있다.

세 유형은 처리기간의 출발점이 뜻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사건 수의 추이도 달라, 세 유형의 처리기간을 하나의 분포로 묶어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하의 분석에서 부상사건과 감독 등 사건을 제외하고, 사고의 발생과 절차의 개시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처리기간의 출발점이 분명하며 표본이 가장 많은 사망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처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망사건은 1,857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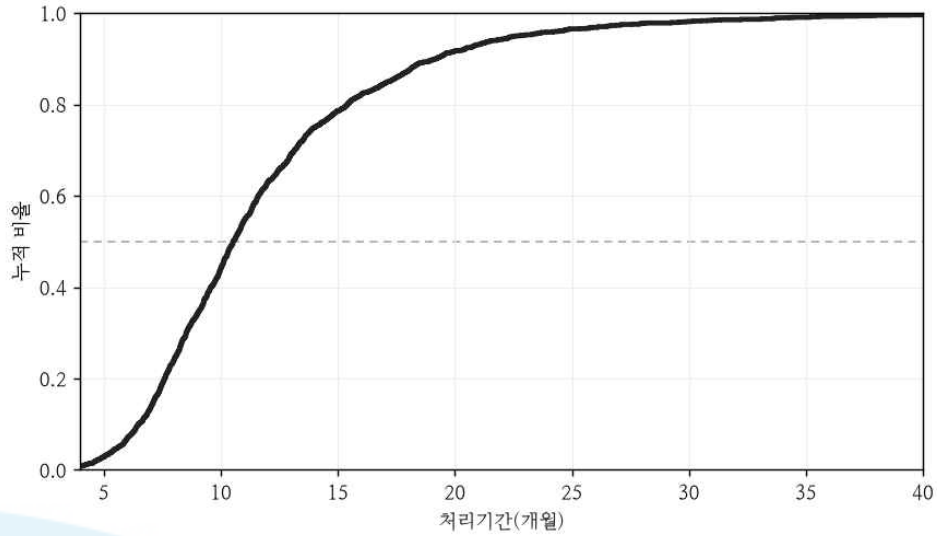
사망사건의 처리기간을 누적분포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사망사

건도 전체 사건과 마찬가지로 종결되는 사건이 6개월경부터 1년경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사건의 4분의 1은 약 8개월 안에, 절반은 약 10.5개월 안에, 4분의 3은 약 14개월 안에 1심 선고에 이르렀고, 처리기간이 가장 긴 상위 10%의 경계는 약 19개월이었다. 1년 안에 선고된 사건이 전체의 약 63%였고,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은 약 7%였다. 사건의 절반가량은 8개월에서 14개월 사이에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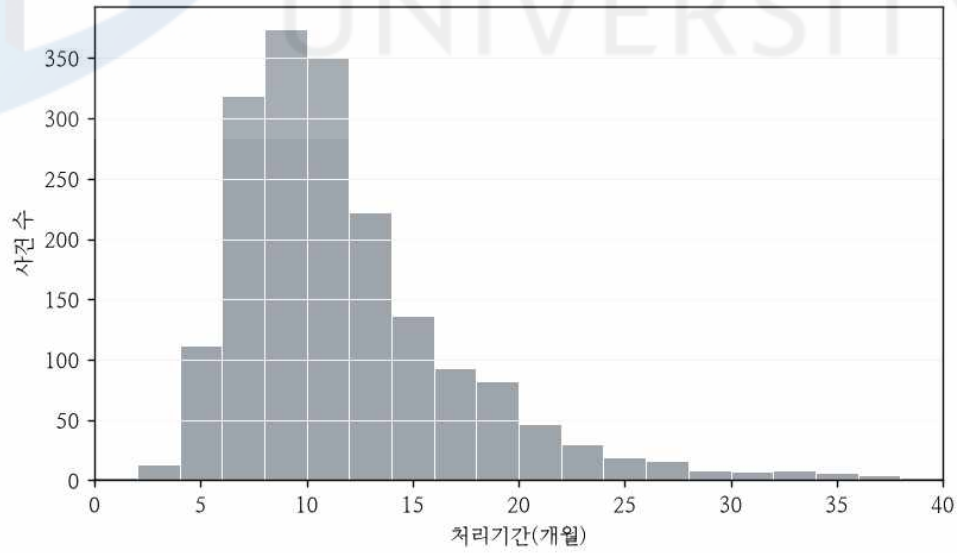
같은 처리기간을 개월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사건 수는 [그림 7]과 같이 8개월에서 14개월 사이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고, 그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였다. 즉 대부분의 사건은 비슷한 기간 안에 처리되었고, 일부 사건만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5] 사건 유형별 판결 건수의 연도별 추이.



[그림 6] 사망사건 처리기간 누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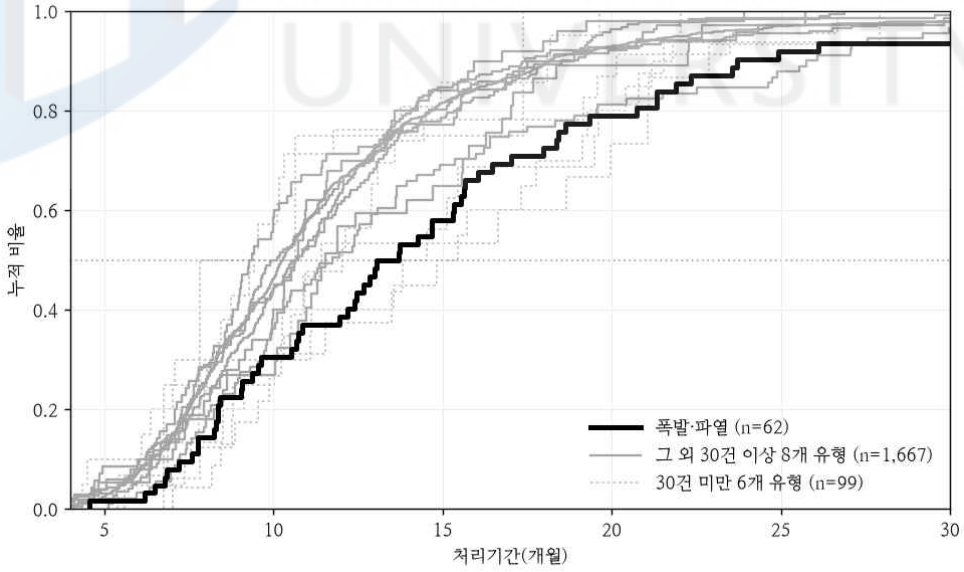
[그림 7] 사망사건 처리기간 분포.

제 3 절 사고유형별 분포

1) 사고유형별 처리기간의 분포

사망사건은 사고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 건수도 분석에 충분한 수준이므로, 사망사고 판결서를 사고유형별로 나누어 처리기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및 [그림 8]과 같다. 사고유형별 처리기간의 분포는 대부분 서로 비슷하였으나, 처리기간이 긴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사고유형은 폭발·파열이었다. 1심 판결까지 18개월 안에 처리된 누적 비율은 사망사건 전체에서 약 87%였으나 폭발·파열 사고는 약 73%에 그쳤다.

사고유형별로 1심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중위값은 부딪힘(70건)이 약 9개월로 가장 짧았고, 끼임·떨어짐·물체에 맞음은 약 10개월이었으며, 폭발·파열은 약 13개월로 가장 길었다. 사고유형별 차이는 1심 판결이 늦은 구간에서 확연하게 나타났다.



[그림 8] 사고유형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표 3〉 사고유형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계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매몰	부딪힘	폭발·파열	감전
3개월 이하	4(0.2)	1(0.1)	3(1.3)	0(0.0)	0(0.0)	0(0.0)	0(0.0)	0(0.0)	0(0.0)
4개월	11(0.6)	5(0.6)	2(0.9)	1(0.5)	1(0.7)	0(0.0)	1(1.4)	0(0.0)	1(2.0)
5개월	38(2.0)	16(1.9)	4(1.7)	5(2.6)	2(1.3)	0(0.0)	5(7.1)	1(1.6)	1(2.0)
6개월	74(4.0)	41(4.8)	8(3.5)	11(5.8)	6(4.0)	3(3.3)	1(1.4)	0(0.0)	2(4.0)
7개월	129(6.9)	66(7.7)	17(7.4)	12(6.3)	12(7.9)	4(4.4)	5(7.1)	4(6.5)	1(2.0)
8개월	190(10.2)	87(10.2)	19(8.3)	26(13.6)	17(11.3)	10(11.0)	8(11.4)	4(6.5)	4(8.0)
9개월	187(10.1)	97(11.3)	24(10.4)	11(5.8)	15(9.9)	7(7.7)	10(14.3)	5(8.1)	6(12.0)
10개월	187(10.1)	84(9.8)	25(10.9)	29(15.2)	13(8.6)	9(9.9)	11(15.7)	5(8.1)	5(10.0)
11개월	193(10.4)	100(11.7)	19(8.3)	15(7.9)	11(7.3)	8(8.8)	6(8.6)	4(6.5)	11(22.0)
12개월	157(8.4)	75(8.8)	25(10.9)	15(7.9)	15(9.9)	6(6.6)	3(4.3)	1(1.6)	4(8.0)
13개월	113(6.1)	49(5.7)	18(7.8)	14(7.3)	10(6.6)	7(7.7)	1(1.4)	6(9.7)	1(2.0)
14개월	109(5.9)	47(5.5)	11(4.8)	12(6.3)	14(9.3)	6(6.6)	2(2.9)	3(4.8)	4(8.0)
15개월	68(3.7)	32(3.7)	6(2.6)	10(5.2)	5(3.3)	3(3.3)	1(1.4)	3(4.8)	2(4.0)
16개월	68(3.7)	25(2.9)	9(3.9)	4(2.1)	7(4.6)	2(2.2)	5(7.1)	5(8.1)	3(6.0)
17개월	42(2.3)	18(2.1)	6(2.6)	4(2.1)	3(2.0)	4(4.4)	1(1.4)	2(3.2)	1(2.0)
18개월	51(2.7)	21(2.5)	9(3.9)	4(2.1)	4(2.6)	1(1.1)	3(4.3)	2(3.2)	1(2.0)
1.5~2년	159(8.6)	61(7.1)	14(6.1)	15(7.9)	14(9.3)	7(7.7)	4(5.7)	11(17.7)	3(6.0)
2~3년	64(3.4)	24(2.8)	9(3.9)	3(1.6)	2(1.3)	13(14.3)	3(4.3)	5(8.1)	0(0.0)
3년 이상	13(0.7)	8(0.9)	2(0.9)	0(0.0)	0(0.0)	1(1.1)	0(0.0)	1(1.6)	0(0.0)
기간 미상	2(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1,859(100)	857(100)	230(100)	191(100)	151(100)	91(100.0)	70(100)	62(100)	50(100)

〈표 3〉 계속

처리기간	질식·산소결핍	화재	역과	빠짐·익사	이상온도	화학물질누출·접촉	기타	절단·베임	미상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개월	2(5.4)	0(0.0)	0(0.0)	2(10.0)	0(0.0)	0(0.0)	0(0.0)	0(0.0)	0(0.0)
6개월	0(0.0)	0(0.0)	1(4.8)	0(0.0)	0(0.0)	1(6.7)	0(0.0)	0(0.0)	0(0.0)
7개월	3(8.1)	1(4.2)	0(0.0)	2(10.0)	0(0.0)	1(6.7)	0(0.0)	1(25.0)	0(0.0)
8개월	3(8.1)	1(4.2)	4(19.0)	2(10.0)	2(12.5)	0(0.0)	2(22.2)	1(25.0)	0(0.0)
9개월	2(5.4)	3(12.5)	4(19.0)	0(0.0)	2(12.5)	1(6.7)	0(0.0)	0(0.0)	0(0.0)
10개월	0(0.0)	2(8.3)	3(14.3)	0(0.0)	0(0.0)	1(6.7)	0(0.0)	0(0.0)	0(0.0)
11개월	5(13.5)	5(20.8)	3(14.3)	0(0.0)	1(6.2)	3(20.0)	1(11.1)	1(25.0)	0(0.0)
12개월	6(16.2)	0(0.0)	1(4.8)	2(10.0)	1(6.2)	1(6.7)	0(0.0)	0(0.0)	2(18.2)
13개월	1(2.7)	4(16.7)	0(0.0)	0(0.0)	0(0.0)	0(0.0)	1(11.1)	0(0.0)	1(9.1)
14개월	1(2.7)	2(8.3)	1(4.8)	1(5.0)	2(12.5)	0(0.0)	2(22.2)	0(0.0)	1(9.1)
15개월	1(2.7)	1(4.2)	1(4.8)	1(5.0)	1(6.2)	0(0.0)	0(0.0)	0(0.0)	1(9.1)
16개월	3(8.1)	0(0.0)	0(0.0)	2(10.0)	2(12.5)	0(0.0)	0(0.0)	0(0.0)	1(9.1)
17개월	2(5.4)	0(0.0)	0(0.0)	0(0.0)	0(0.0)	1(6.7)	0(0.0)	0(0.0)	0(0.0)
18개월	3(8.1)	0(0.0)	0(0.0)	2(10.0)	0(0.0)	0(0.0)	0(0.0)	1(25.0)	0(0.0)
1.5~2년	4(10.8)	4(16.7)	3(14.3)	6(30.0)	4(25.0)	5(33.3)	2(22.2)	0(0.0)	2(18.2)
2~3년	1(2.7)	1(4.2)	0(0.0)	0(0.0)	1(6.2)	1(6.7)	1(11.1)	0(0.0)	0(0.0)
3년 이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1)
기간 미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8.2)
합계	37(100)	24(100)	21(100)	20(100)	16(100)	15(100)	9(100)	4(100)	11(100)

[그림 9]

2) 처리가 오래 걸리는 사건

사고유형별 처리기간의 차이는 처리기간이 긴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처리기간이 18개월을 넘는 비중은 폭발·파열이 62건 가운데 17건으로 약 27%였으며, 이는 폭발·파열을 제외한 유형 전체(1,795건)의 약 12%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기준을 2년으로 옮겨도 폭발·파열은 약 10%, 폭발·파열을 제외한 유형 전체는 약 4%로, 2배 이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처리기간이 짧거나 중간인 구간, 곧 대부분의 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사고유형이 달라도 분포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여 사고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장 뚜렷한 예외는 처리기간이 긴 구간의 폭발·파열이었다. 2년을 넘긴 사건의 비중은 폭발·파열이 62건 가운데 6건으로 약 10%였고, 폭발·파열을 제외한 유형에서는 대개 5% 이하여서, 폭발·파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폭발·파열은 62건으로 사건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18개월 또는 2년을 넘긴 사건의 비중 차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본 연구는 폭발·파열에서 처리기간이 긴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경향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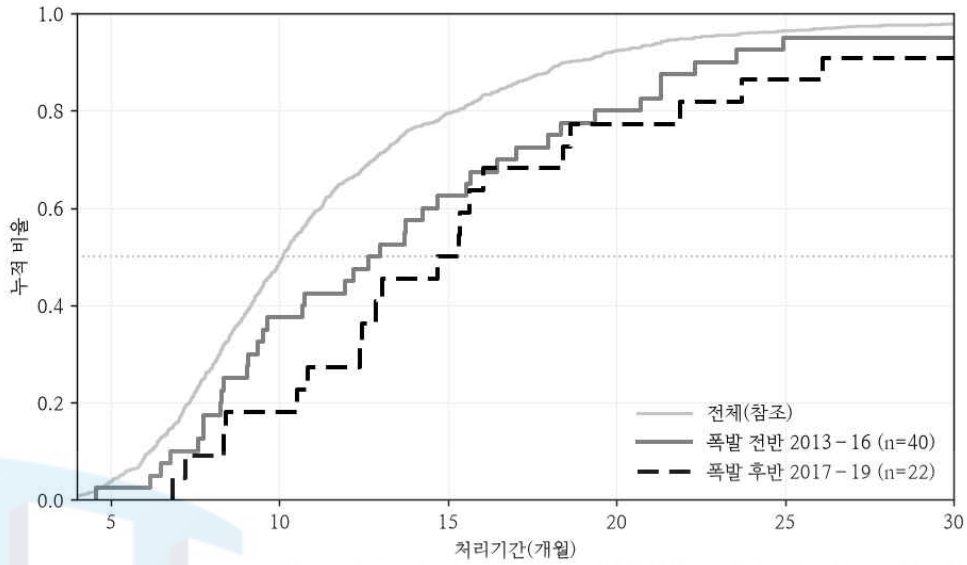
폭발·파열에서 처리기간이 긴 사건이 많은 경향은 업종을 고정하여도 유지되었다. 폭발·파열이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 안에서 비교하여도, 폭발·파열은 같은 업종의 다른 사건보다 처리기간이 긴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1심 선고연도를 기준으로 폭발·파열 사건을 분석 대상 기간의 전반인 2013~2016년과 후반인 2017~2019년으로 나누어, 처리기간이 긴 사건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지 또는 두 시기에 모두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및 [그림 9]와 같다. 18개월을 넘는 비중은 전반이 약 25%, 후반이 약 32%로, 어느 시기에서도 사망사건 전체에서 18개월을 넘는 비중인 약 13%보다 현저히 높았다. 즉 폭발·파열에서 처리기간이 긴 사건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전반과 후반에 모두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경향이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폭발·파열은 표본이 적어 연도별로 더 세분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폭발·파열에서 처리기간이 긴 사건

이 많은 경향에 시기에 따른 변화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고유형별 처리기간을 업종에 따라 더 나눈 상세 분포는 〈표 16〉부터 〈표 32〉까지 부록에 정리하였다.

〈표 4〉 폭발·파열 시기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전반(2013~2016)	후반(2017~2019)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5개월	1(2.5)	0(0.0)	1(1.6)
6개월	0(0.0)	0(0.0)	0(0.0)
7개월	3(7.5)	1(4.5)	4(6.5)
8개월	3(7.5)	1(4.5)	4(6.5)
9개월	3(7.5)	2(9.1)	5(8.1)
10개월	5(12.5)	0(0.0)	5(8.1)
11개월	2(5.0)	2(9.1)	4(6.5)
12개월	1(2.5)	0(0.0)	1(1.6)
13개월	3(7.5)	3(13.6)	6(9.7)
14개월	2(5.0)	1(4.5)	3(4.8)
15개월	2(5.0)	1(4.5)	3(4.8)
16개월	2(5.0)	3(13.6)	5(8.1)
17개월	1(2.5)	1(4.5)	2(3.2)
18개월	2(5.0)	0(0.0)	2(3.2)
1.5~2년	7(17.5)	4(18.2)	11(17.7)
2~3년	3(7.5)	2(9.1)	5(8.1)
3년 이상	0(0.0)	1(4.5)	1(1.6)
합계	**40**(100)	**22**(100)	**62**(100)



[그림 9] 폭발·파열 시기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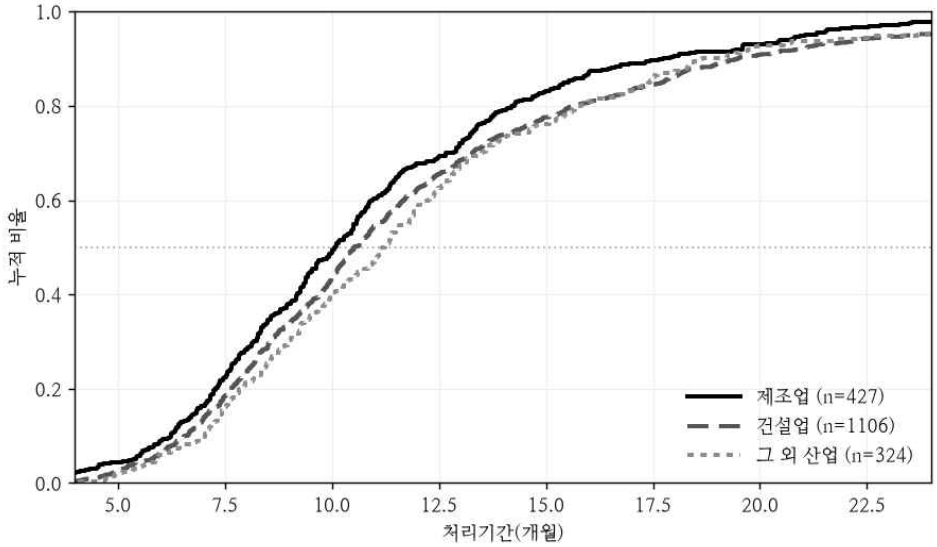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제 4 절 업종별 분포

건설업, 제조업 및 그 외 산업의 처리기간 분포와 누적분포는 〈표 5〉·[그림 10]과 같다. 세 업종의 분포는 거의 다르지 않았다. 누적 비율로 보면 18개월까지 제조업은 약 91%, 건설업은 약 86%, 그 외 산업은 약 87%가 종결되어, 업종 사이의 차이는 몇 %포인트 수준이었다. 또한 세 업종 모두 6개월 이내 종결 비중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는 〈표 6〉·[그림 11]과 같다. 6개월 이내 종결 비중은 제조업이 2013년 5.9%에서 2019년 1.9%로, 건설업이 13.0%에서 1.6%로, 그 외 산업이 6.2%에서 1.5%로 낮아졌는데, 중간 연도에는 등락이 있어 매년 고르게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표 5〉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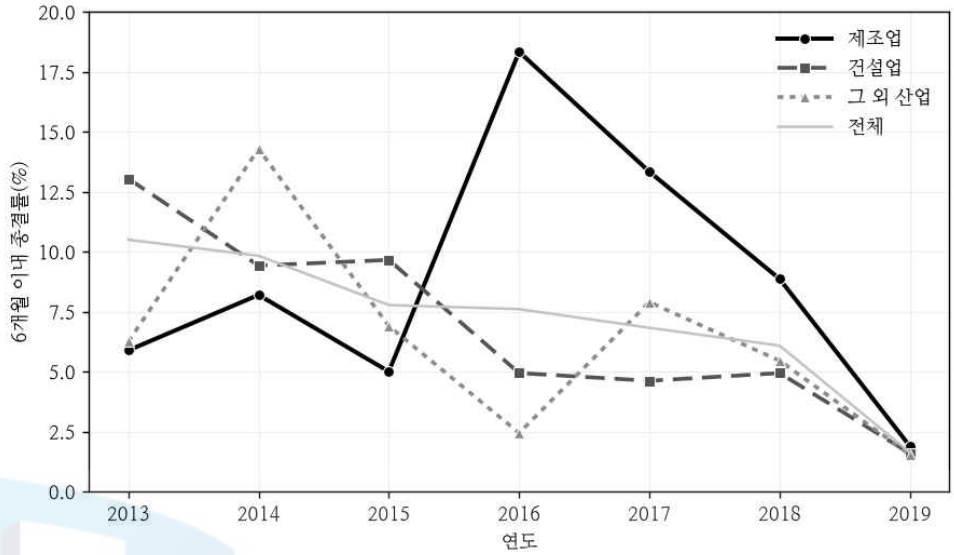
처리기간	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처리 건수	누적 건수(%)	처리 건수	누적 건수(%)	처리 건수	누적 건수(%)	처리 건수	누적 건수(%)
3개월 이하	4	4 (0.2)	2	2 (0.5)	1	1 (0.1)	1	1 (0.3)
4개월	11	15 (0.8)	7	9 (2.1)	4	5 (0.5)	0	1 (0.3)
5개월	38	53 (2.9)	10	19 (4.4)	23	28 (2.5)	5	6 (1.9)
6개월	74	127 (6.8)	19	38 (8.9)	42	70 (6.3)	13	19 (5.9)
7개월	129	256 (13.8)	32	70 (16.4)	84	154 (13.9)	13	32 (9.9)
8개월	190	446 (24.0)	51	121 (28.3)	102	256 (23.1)	37	69 (21.3)
9개월	187	633 (34.1)	41	162 (37.9)	118	374 (33.8)	28	97 (29.9)
10개월	187	820 (44.2)	47	209 (48.9)	107	481 (43.5)	33	130 (40.1)
11개월	193	1,013 (54.6)	49	258 (60.4)	122	603 (54.5)	22	152 (46.9)
12개월	157	1,170 (63.0)	31	289 (67.7)	88	691 (62.5)	38	190 (58.6)
13개월	113	1,283 (69.1)	19	308 (72.1)	66	757 (68.4)	28	218 (67.3)
14개월	109	1,392 (75.0)	30	338 (79.2)	60	817 (73.9)	19	237 (73.1)
15개월	68	1,460 (78.6)	17	355 (83.1)	41	858 (77.6)	10	247 (76.2)
16개월	68	1,528 (82.3)	17	372 (87.1)	36	894 (80.8)	15	262 (80.9)
17개월	42	1,570 (84.5)	8	380 (89.0)	27	921 (83.3)	7	269 (83.0)
18개월	51	1,621 (87.3)	7	387 (90.6)	31	952 (86.1)	13	282 (87.0)
1.5~2년	159	1,780 (95.9)	31	418 (97.9)	101	1,053 (95.2)	27	309 (95.4)
2~3년	64	1,844 (99.3)	8	426 (99.8)	43	1,096 (99.1)	13	322 (99.4)
3년 이상	13	1,857 (100)	1	427 (100)	10	1,106 (100)	2	324 (100)
기간 미상	2	–	1	–	1	–	0	–
합계	1,859	–	428	–	1,107	–	324	–



[그림 10] 업종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표 6〉 업종별 6개월 이내 종결 비중 (1심 선고연도)

연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2013년	2(5.9)	15(13.0)	2(6.2)
2014년	5(8.2)	13(9.4)	5(14.3)
2015년	4(5.0)	14(9.7)	4(6.9)
2016년	11(18.3)	8(4.9)	1(2.4)
2017년	8(13.3)	9(4.6)	3(7.9)
2018년	7(8.9)	8(4.9)	3(5.5)
2019년	1(1.9)	3(1.6)	1(1.5)
전체	**38(8.9)**	**70(6.3)**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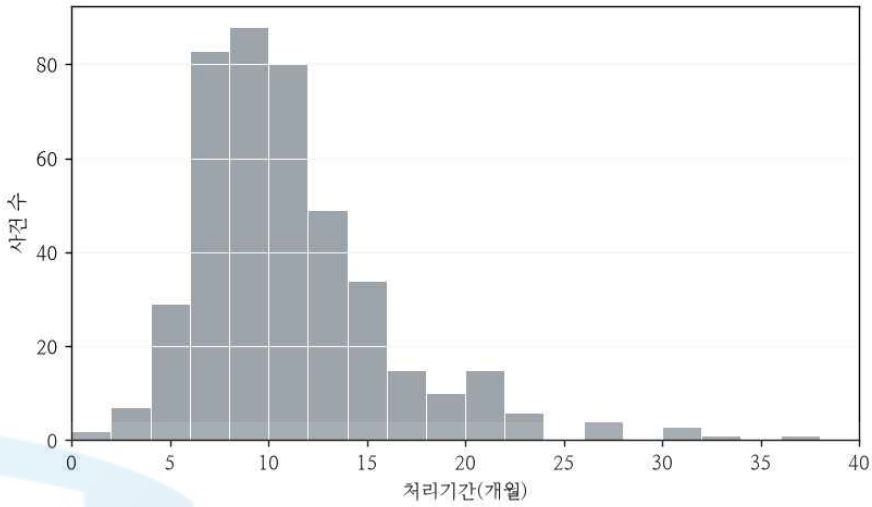


[그림 11] 업종별 6개월 이내 1심 종결사건 비중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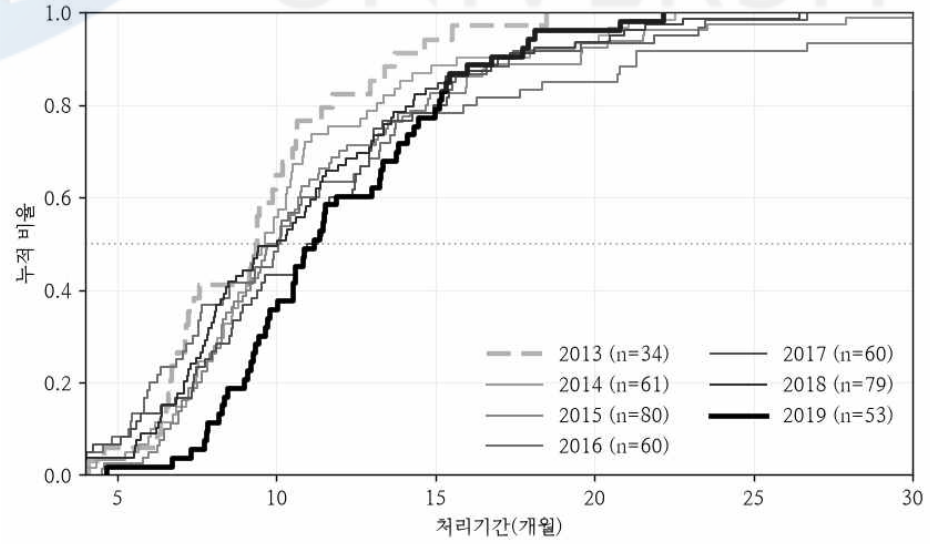
제조업은 사망사건이 427건이며, 처리기간 분포는 〈표 7〉과 같다. 중위값이 약 10개월로 세 업종 가운데 가장 짧았고, 18개월을 넘는 비중도 약 9%로 가장 낮았다. 6개월 이내 종결 비중은 중간 연도에 등락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약 2%로 낮아졌다. 사건이 어느 한 구간에 집중되는 정도는 연도별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각 연도의 사건 가운데 같은 비중이 종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늦은 연도일수록 길었다. 제조업의 처리기간 분포와 연도별 추이는 [그림 12]·[그림 13]과 같다.

〈표 7〉 제조업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1(1.7)	0(0.0)	1(1.3)	0(0.0)	2(0.5)
4개월	0(0.0)	1(1.6)	0(0.0)	2(3.3)	2(3.3)	2(2.5)	0(0.0)	7(1.6)
5개월	2(5.9)	1(1.6)	2(2.5)	2(3.3)	2(3.3)	0(0.0)	1(1.9)	10(2.3)
6개월	0(0.0)	3(4.9)	2(2.5)	6(10.0)	4(6.7)	4(5.1)	0(0.0)	19(4.4)
7개월	7(20.6)	4(6.6)	7(8.8)	4(6.7)	2(3.3)	7(8.9)	1(1.9)	32(7.5)
8개월	5(14.7)	7(11.5)	10(12.5)	7(11.7)	6(10.0)	12(15.2)	4(7.5)	51(11.9)
9개월	0(0.0)	8(13.1)	10(12.5)	3(5.0)	6(10.0)	9(11.4)	5(9.4)	41(9.6)
10개월	8(23.5)	10(16.4)	9(11.2)	4(6.7)	4(6.7)	4(5.1)	8(15.1)	47(11.0)
11개월	4(11.8)	10(16.4)	10(12.5)	7(11.7)	4(6.7)	7(8.9)	7(13.2)	49(11.5)
12개월	2(5.9)	2(3.3)	6(7.5)	2(3.3)	6(10.0)	7(8.9)	6(11.3)	31(7.3)
13개월	1(2.9)	2(3.3)	1(1.2)	3(5.0)	7(11.7)	4(5.1)	1(1.9)	19(4.4)
14개월	2(5.9)	4(6.6)	5(6.2)	6(10.0)	3(5.0)	5(6.3)	5(9.4)	30(7.0)
15개월	1(2.9)	2(3.3)	4(5.0)	0(0.0)	2(3.3)	4(5.1)	4(7.5)	17(4.0)
16개월	1(2.9)	1(1.6)	3(3.8)	1(1.7)	4(6.7)	2(2.5)	5(9.4)	17(4.0)
17개월	0(0.0)	0(0.0)	2(2.5)	1(1.7)	1(1.7)	3(3.8)	1(1.9)	8(1.9)
18개월	0(0.0)	1(1.6)	0(0.0)	1(1.7)	2(3.3)	1(1.3)	2(3.8)	7(1.6)
1.5~2년	1(2.9)	5(8.2)	7(8.8)	5(8.3)	4(6.7)	6(7.6)	3(5.7)	31(7.3)
2~3년	0(0.0)	0(0.0)	2(2.5)	4(6.7)	1(1.7)	1(1.3)	0(0.0)	8(1.9)
3년 이상	0(0.0)	0(0.0)	0(0.0)	1(1.7)	0(0.0)	0(0.0)	0(0.0)	1(0.2)
기간 미상	0	1	0	0	0	0	0	1
합계	**34**(100)	**62**(100)	**80**(100)	**60**(100)	**60**(100)	**79**(100)	**53**(100)	**428**(100)



[그림 12] 제조업 처리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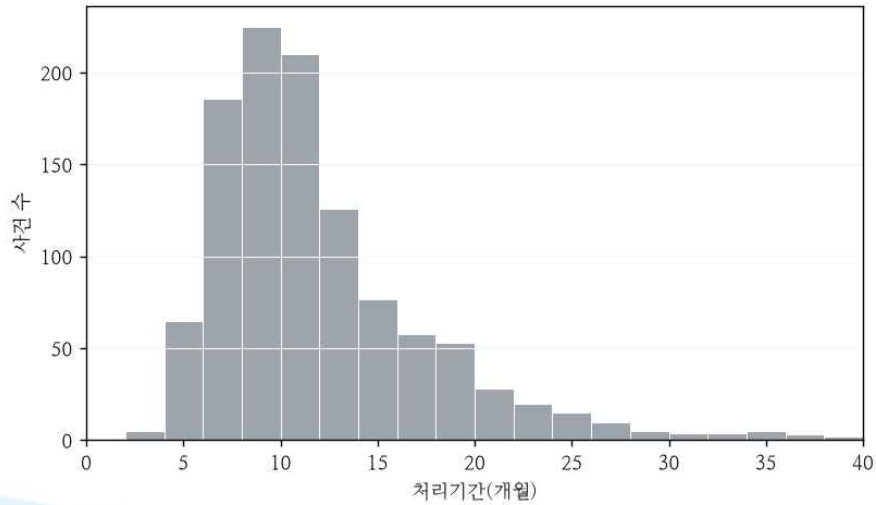


[그림 13] 제조업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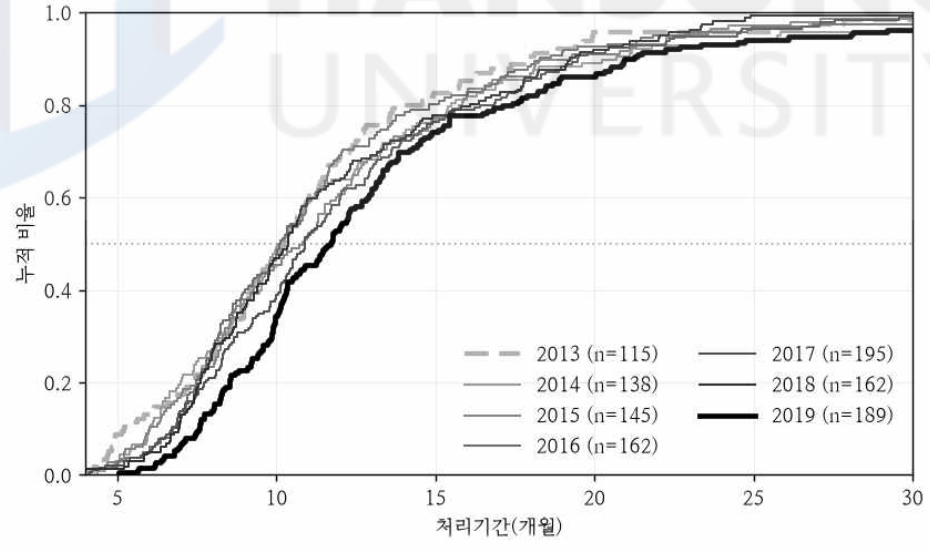
건설업은 사망사건이 1,106건으로 세 업종 가운데 가장 많으며, 처리기간 분포는 〈표 8〉과 같다. 중위값이 약 10.5개월이었고, 18개월을 넘는 비중은 약 14%였다. 6개월 이내 종결 비중은 2013년 약 13%에서 2019년 약 2%로 대체로 꾸준히 낮아졌다. 건설업의 처리기간 분포와 연도별 추이는 [그림 14]·[그림 15]와 같다.

〈표 8〉 건설업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1(0.6)	0(0.0)	0(0.0)	0(0.0)	1(0.1)
4개월	1(0.9)	0(0.0)	0(0.0)	1(0.6)	0(0.0)	2(1.2)	0(0.0)	4(0.4)
5개월	9(7.8)	4(2.9)	4(2.8)	2(1.2)	4(2.1)	0(0.0)	0(0.0)	23(2.1)
6개월	5(4.3)	9(6.5)	10(6.9)	4(2.5)	5(2.6)	6(3.7)	3(1.6)	42(3.8)
7개월	5(4.3)	15(10.9)	11(7.6)	12(7.4)	18(9.2)	13(8.0)	10(5.3)	84(7.6)
8개월	9(7.8)	9(6.5)	9(6.2)	24(14.8)	14(7.2)	23(14.2)	14(7.4)	102(9.2)
9개월	13(11.3)	15(10.9)	21(14.5)	20(12.3)	19(9.7)	14(8.6)	16(8.5)	118(10.7)
10개월	11(9.6)	16(11.6)	11(7.6)	13(8.0)	16(8.2)	18(11.1)	22(11.6)	107(9.7)
11개월	15(13.0)	13(9.4)	9(6.2)	19(11.7)	24(12.3)	21(13.0)	21(11.1)	122(11.0)
12개월	11(9.6)	7(5.1)	13(9.0)	16(9.9)	18(9.2)	7(4.3)	16(8.5)	88(8.0)
13개월	8(7.0)	6(4.3)	12(8.3)	6(3.7)	11(5.6)	8(4.9)	15(7.9)	66(6.0)
14개월	5(4.3)	8(5.8)	6(4.1)	8(4.9)	12(6.2)	6(3.7)	15(7.9)	60(5.4)
15개월	3(2.6)	4(2.9)	6(4.1)	4(2.5)	8(4.1)	8(4.9)	8(4.2)	41(3.7)
16개월	3(2.6)	7(5.1)	8(5.5)	3(1.9)	5(2.6)	3(1.9)	7(3.7)	36(3.3)
17개월	3(2.6)	4(2.9)	4(2.8)	5(3.1)	4(2.1)	4(2.5)	3(1.6)	27(2.4)
18개월	3(2.6)	2(1.4)	2(1.4)	5(3.1)	8(4.1)	6(3.7)	5(2.6)	31(2.8)
1.5~2년	6(5.2)	9(6.5)	14(9.7)	12(7.4)	19(9.7)	20(12.3)	21(11.1)	101(9.1)
2~3년	4(3.5)	8(5.8)	4(2.8)	6(3.7)	9(4.6)	2(1.2)	10(5.3)	43(3.9)
3년 이상	1(0.9)	2(1.4)	1(0.7)	1(0.6)	1(0.5)	1(0.6)	3(1.6)	10(0.9)
기간 미상	–	–	–	–	1	–	–	1
합계	**115**(100)	**138**(100)	**145**(100)	**162**(100)	**196**(100)	**162**(100)	**189**(100)	**1,107**(100)



[그림 14] 건설업 처리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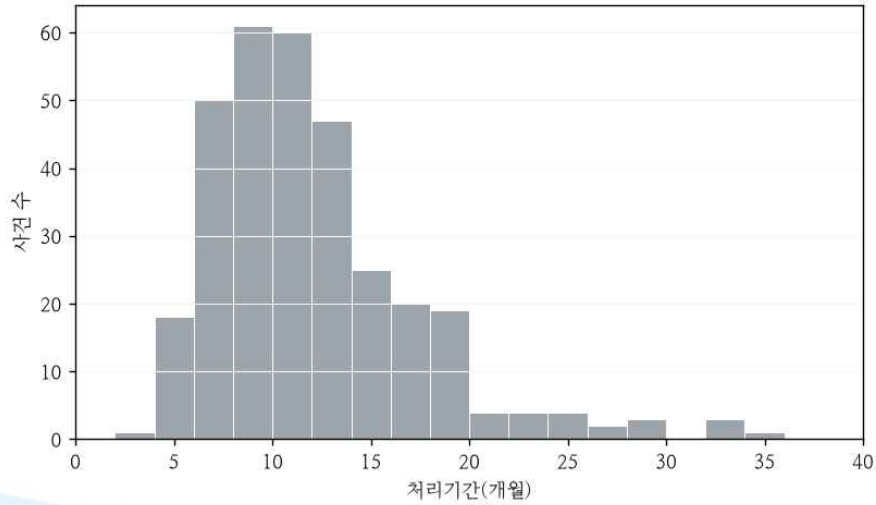
[그림 15] 건설업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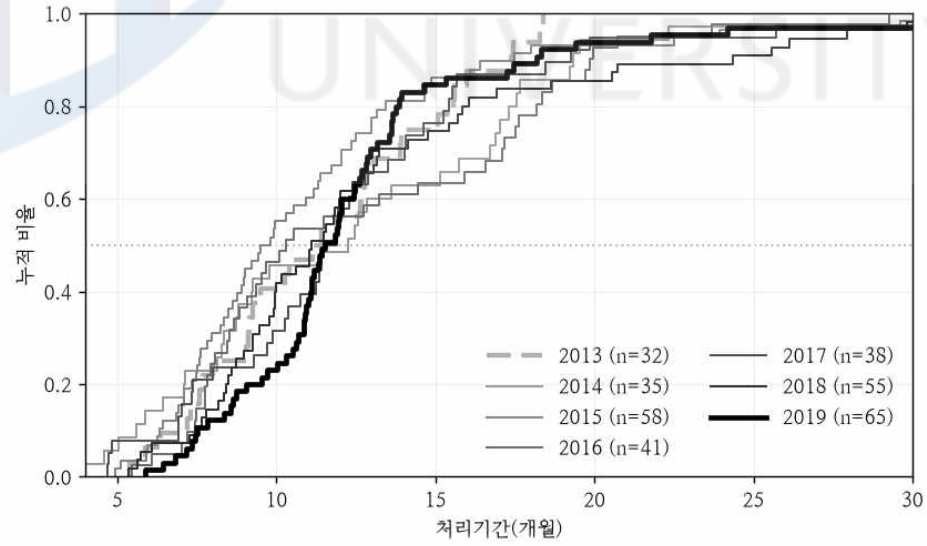
그 외 산업은 사망사건이 324건이며, 처리기간 분포는 〈표 9〉와 같다. 중위값이 약 11개월로 세 업종 가운데 가장 길었고, 18개월을 넘는 비중은 약 13%였다. 6개월 이내 종결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하다가 2019년에는 약 2%로 낮아졌다. 그 외 산업의 처리기간 분포와 연도별 추이는 [그림 16]·[그림 17]과 같다.

〈표 9〉 그 외 산업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개월 이하	0(0.0)	1(2.9)	0(0.0)	0(0.0)	0(0.0)	0(0.0)	0(0.0)	1(0.3)
4개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개월	0(0.0)	1(2.9)	1(1.7)	0(0.0)	3(7.9)	0(0.0)	0(0.0)	5(1.5)
6개월	2(6.2)	3(8.6)	3(5.2)	1(2.4)	0(0.0)	3(5.5)	1(1.5)	13(4.0)
7개월	1(3.1)	1(2.9)	5(8.6)	1(2.4)	2(5.3)	1(1.8)	2(3.1)	13(4.0)
8개월	5(15.6)	2(5.7)	9(15.5)	8(19.5)	4(10.5)	4(7.3)	5(7.7)	37(11.4)
9개월	0(0.0)	5(14.3)	7(12.1)	5(12.2)	0(0.0)	7(12.7)	4(6.2)	28(8.6)
10개월	5(15.6)	3(8.6)	7(12.1)	4(9.8)	3(7.9)	8(14.5)	3(4.6)	33(10.2)
11개월	2(6.2)	0(0.0)	3(5.2)	3(7.3)	3(7.9)	2(3.6)	9(13.8)	22(6.8)
12개월	3(9.4)	1(2.9)	4(6.9)	1(2.4)	7(18.4)	9(16.4)	13(20.0)	38(11.7)
13개월	3(9.4)	4(11.4)	6(10.3)	1(2.4)	3(7.9)	2(3.6)	9(13.8)	28(8.6)
14개월	3(9.4)	1(2.9)	2(3.4)	1(2.4)	1(2.6)	3(5.5)	8(12.3)	19(5.9)
15개월	0(0.0)	0(0.0)	3(5.2)	1(2.4)	3(7.9)	2(3.6)	1(1.5)	10(3.1)
16개월	4(12.5)	2(5.7)	0(0.0)	1(2.4)	4(10.5)	3(5.5)	1(1.5)	15(4.6)
17개월	0(0.0)	2(5.7)	2(3.4)	1(2.4)	0(0.0)	2(3.6)	0(0.0)	7(2.2)
18개월	2(6.2)	4(11.4)	1(1.7)	4(9.8)	0(0.0)	0(0.0)	2(3.1)	13(4.0)
1.5~2년	2(6.2)	4(11.4)	3(5.2)	8(19.5)	3(7.9)	3(5.5)	4(6.2)	27(8.3)
2~3년	0(0.0)	1(2.9)	2(3.4)	1(2.4)	1(2.6)	6(10.9)	2(3.1)	13(4.0)
3년 이상	0(0.0)	0(0.0)	0(0.0)	0(0.0)	1(2.6)	0(0.0)	1(1.5)	2(0.6)
합계	**32**(100)	**35**(100)	**58**(100)	**41**(100)	**38**(100)	**55**(100)	**65**(100)	**324**(100)



[그림 16] 그 외 산업 처리기간 분포.



[그림 17] 그 외 산업의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HANSUNG UNIVERSITY

세 업종의 중위값은 10개월에서 11개월 사이로, 차이가 1개월 내외였다. 18개월을 넘는 비중도 약 9%에서 약 14% 사이였다. 사고유형 가운데 폭발·파열은 18개월을 넘는 비중이 약 27%였으나, 업종별 비교에서는 어느 업종도 폭발·파열만큼 높은 비중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처리기간의 분포가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세 업종 모두 6개월 이내 종결 비중이 마지막 연도에 2% 아래로 낮아졌고, 늦은 연도일수록 처리기간이 전체적으로 길어졌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변화는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았다.

업종은 처리기간을 구분 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인데도, 실제 분포는 업종에 따라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업종 사이의 차이가 작다는 사실은 폭발·파열에서 처리기간이 긴 사건이 많다는 결과가 예외적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뒷받침한다. 폭발·파열의 예외는 사건의 규모, 곧 사망자 수와도 관련이 있다.

HANSUNG UNIVERSITY

제 5 절 사건 규모별 분포: 사망자 수

사건의 규모는 한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로 보았다. 사망자 수별 처리기간 분포는 〈표 10〉에 정리하였다.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이 1,737건으로 대부분이었고, 2명인 사건이 86건, 3명 이상인 사건이 36건이었다. 사망자 수에 따라 처리기간을 누적분포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사망자가 1명인 사건과 둘 이상인 사건은 처리기간이 짧은 구간에서는 종결 비중의 차이가 작았고, 10개월을 지나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종결 비중의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은 약 14.7개월이었다. 이 지점까지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은 78.7%가 종결된 데 비해 둘 이상인 사건은 57.4%가 종결되어, 두 비중의 차이는 21.3%포인트였다. 다만 사망자가 1명인 사건과 둘 이상인 사건 모두,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구간이 있고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건 수가 점차 감소하는 분포의 형태는 같았다. 사망자 수에 따라 나눈 분포의 형태는 [그림 19]부터 [그림 21]까지의 분포에서 거듭 확인된다.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의 중위값은 약 10.5개월이었고 둘 이상이 사망한 사건의 중위값은 약 12개월로, 그 차이는 약 1.5개월이었다. 상위 25% 지점은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이 약 14개월인 데 비해 둘 이상인 사건은 18개월을 넘겼고, 상위 10% 지점은 1명인 사건이 약 18개월인 데 비해 둘 이상인 사건은 2년을 넘겼다. 즉 분위가 높아질수록 사망자가 1명인 사건과 둘 이상인 사건의 처리기간 차이가 커졌다.

사망자가 1명인 사건과 둘 이상인 사건의 차이는 주로 18개월을 넘는 사건의 비중에서 나타났다. 누적 기준으로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은 18개월까지 약 88%가 종결되는 데 비해 둘 이상이 사망한 사건 122건은 약 71%가 종결되어, 18개월을 넘는 비중은 각각 약 12%와 약 29%였다. 사망자 수에 따른 종결 비중의 차이는 처리기간이 긴 구간으로 갈수록 커졌다. 처리기간이 1년을 넘긴 비중은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이 36.0%, 둘 이상인 사건이 50.8%로 약 1.4배였다. 기준을 18개월로 옮기면 두 비중은 11.6%와 28.7%로 둘 이상인 사건이 약 2.5배였고, 2년으로 옮기면 3.4%와 14.8%로 약 4.3배가 되었다.

다만 2년을 넘긴 사건은 둘 이상 사망한 122건 가운데 18건이어서, 둘 이

상이 사망한 사건도 약 85%는 2년 안에 종결되었다. 둘 이상이 사망한 122건에서 폭발·파열 19건을 제외하여도 18개월을 넘는 비중은 약 30%였다. 즉 규모가 클수록 처리기간이 긴 사건이 많아지는 현상은 폭발·파열을 제외하여도 그대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은 사망사건 전체의 7% 미만으로 표본이 적어, 사망자 수에 따른 처리기간의 차이를 단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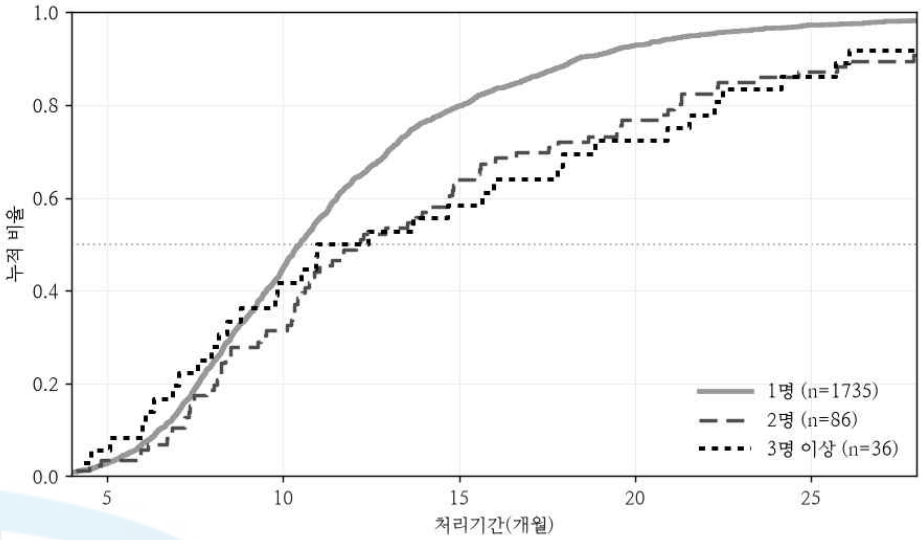
폭발·파열은 사망자가 1명인 43건에서도 18개월을 넘는 비중이 약 30%로, 사망자가 1명인 폭발·파열 외 사건의 약 11%보다 높았다. 폭발·파열에서 처리기간이 긴 사건이 많다는 점 또한 사망자 수를 고정하여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망자 수를 고정한 비교와 폭발·파열을 제외한 비교에서는, 사망자 수와 폭발·파열 여부 가운데 한쪽 조건을 같게 두어도 남은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18개월을 넘는 사건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즉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과 폭발·파열 사건은 각각 처리기간이 18개월을 넘는 사건의 비중이 높았지만, 중위값은 나머지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망자가 둘 이상이면서 폭발·파열로 발생한 사건에서 처리기간이 18개월을 넘는 사건의 비중이 한쪽 조건만 지닌 사건보다 더 높아지는지 또는 낮아지는지는, 해당 사건이 19건으로 적어 판단하지 않는다. 사망사건의 처리기간을 사망자 수와 폭발·파열 여부에 따라 함께 나눈 상세 분포는 〈표 33〉과 같이 부록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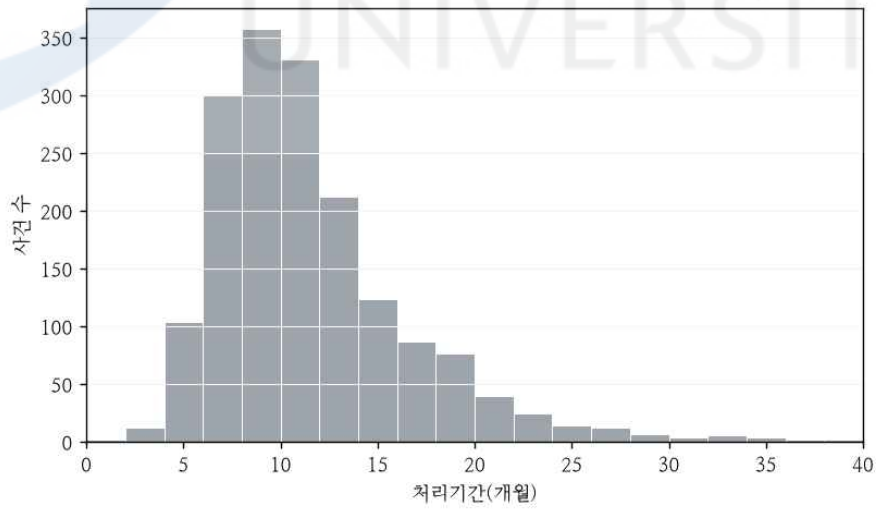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과 폭발·파열 사건에서는 처리기간이 긴 사건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그 비중이 높은 까닭을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고의 종류로 나누어도 사망자 수로 나누어도 달라진 부분은 처리기간이 긴 사건의 비중이었고, 대다수 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과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건 수가 감소하는 형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처리기간의 분포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나누었을 때가 아니라, 연도에 따라 나누었을 때 뚜렷이 달라진다.

〈표 10〉 사망자수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1명	2명	3명 이상	계
3개월 이하	4(0.2)	0(0.0)	0(0.0)	4(0.2)
4개월	11(0.6)	0(0.0)	0(0.0)	11(0.6)
5개월	33(1.9)	3(3.5)	2(5.6)	38(2.0)
6개월	71(4.1)	2(2.3)	1(2.8)	74(4.0)
7개월	121(7.0)	4(4.7)	4(11.1)	129(6.9)
8개월	180(10.4)	7(8.1)	3(8.3)	190(10.2)
9개월	176(10.1)	8(9.3)	3(8.3)	187(10.1)
10개월	182(10.5)	3(3.5)	2(5.6)	187(10.1)
11개월	179(10.3)	11(12.8)	3(8.3)	193(10.4)
12개월	153(8.8)	4(4.7)	0(0.0)	157(8.4)
13개월	108(6.2)	4(4.7)	1(2.8)	113(6.1)
14개월	105(6.0)	3(3.5)	1(2.8)	109(5.9)
15개월	61(3.5)	6(7.0)	1(2.8)	68(3.7)
16개월	63(3.6)	3(3.5)	2(5.6)	68(3.7)
17개월	40(2.3)	2(2.3)	0(0.0)	42(2.3)
18개월	47(2.7)	2(2.3)	2(5.6)	51(2.7)
1.5~2년	142(8.2)	12(14.0)	5(13.9)	159(8.6)
2~3년	49(2.8)	10(11.6)	5(13.9)	64(3.4)
3년 이상	10(0.6)	2(2.3)	1(2.8)	13(0.7)
기간 미상	2(0.1)	0(0.0)	0(0.0)	2(0.1)
합계	1,737(100)	86(100)	36(100)	1,85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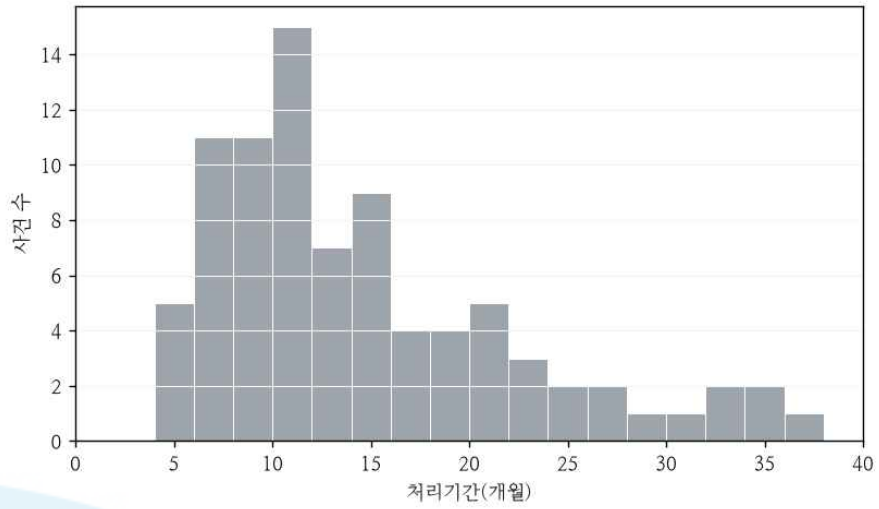


[그림 18] 사망자 수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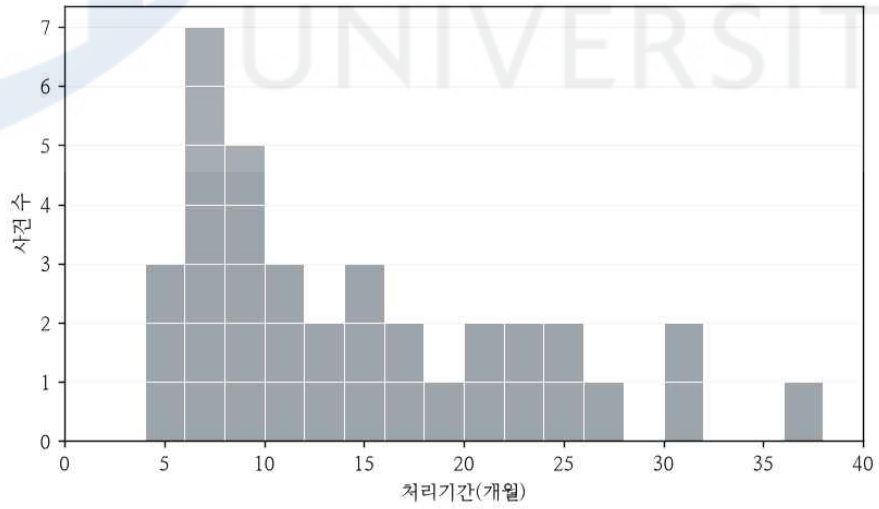


[그림 19]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의 처리기간 분포.

HANSUNG UNIVERSITY



[그림 20] 사망자가 2명인 사건의 처리기간 분포.



[그림 21] 사망자가 3명 이상인 사건의 처리기간 분포.

제 6 절 연도별 분포: 시간에 따른 분포의 우측 이동

제3절부터 제5절까지는 사고유형, 업종 및 규모의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처리기간의 분포가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분포가 달라진다.

1) 처리기간 구간 비중의 변화

전체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이 약 7%, 6개월 초과 10개월 이내가 약 37%, 10개월 초과 1년 이내가 약 19%였으며, 1년을 넘긴 사건이 약 37%였다. 구간별 비중은 〈표 11〉에 정리하였다.

일정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기준 기간 안에 종결된 사건의 비중은 분석 대상 기간의 이른 연도일수록 높았고 늦은 연도일수록 낮았다.

〈표 11〉 연도별 처리기간 구간별 비중

연도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0개월 이내	10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계
2013년	19(10.5)	69(38.1)	37(20.4)	56(30.9)	181(100)
2014년	23(9.8)	95(40.6)	33(14.1)	83(35.5)	234(100)
2015년	22(7.8)	116(41.0)	45(15.9)	100(35.3)	283(100)
2016년	20(7.6)	105(39.9)	48(18.3)	90(34.2)	263(100)
2017년	20(6.8)	94(32.1)	62(21.2)	117(39.9)	293(100)
2018년	18(6.1)	120(40.5)	53(17.9)	105(35.5)	296(100)
2019년	5(1.6)	94(30.6)	72(23.5)	136(44.3)	307(100)
전체	**127(6.8)**	**693(37.3)**	**350(18.8)**	**687(37.0)**	**1,857**(100)

연도별 처리기간의 분포와 누적분포는 〈표 12〉·[그림 22]와 같다. 누적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결된 비중은 2013년 약 69%에서 2019년 약 56%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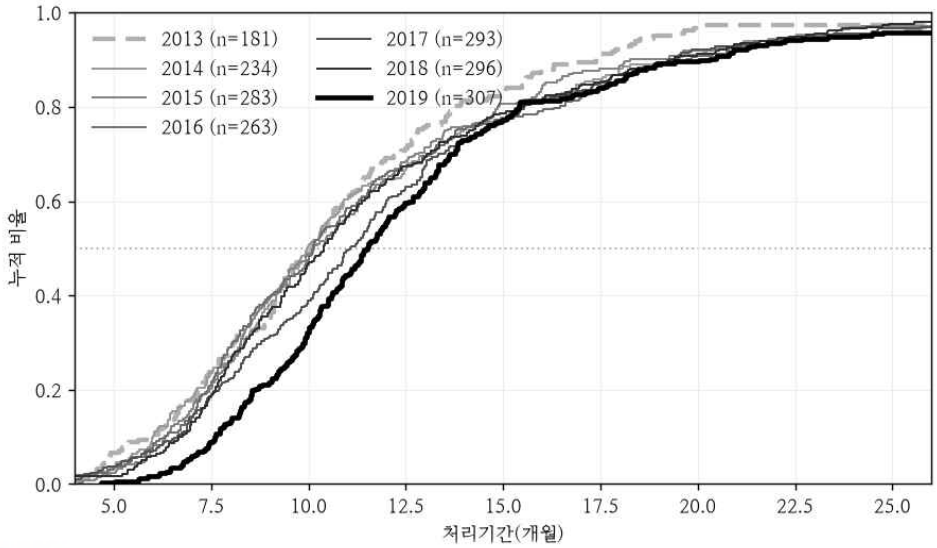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처리기간 안에 종결되는 비중이 낮아지는 변화, 곧 분포가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옮겨가는 변화(분포의 이동)는 처리기간을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6개월, 10개월 및 18개월을 경계로 네 구간으로 나누면, 분석 대상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 연도 사이에 6개월 이내에 종결되던 구간의 비중은 약 10%에서 2% 아래로 감소하였고,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도 약 38%에서 약 31%로 감소하였다. 반면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는 약 44%에서 약 54%로, 18개월을 넘는 비중은 약 8%에서 약 14%로 증가하였다. 신속히 종결되던 두 구간에서 감소한 약 16%포인트 가운데 약 10%포인트는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로, 약 6%포인트는 18개월을 넘는 구간으로 나뉘어 옮겨갔다. 즉 신속히 종결되는 사건이 감소하는 한편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면서, 분포 전체가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이동하였다.

네 구간 가운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6개월 이내 구간이었다. 6개월 안에 종결되는 사건의 비중은 2013년에는 181건 가운데 19건으로 10.5%였으며, 2014년 9.8%, 2015년 7.8%, 2016년 7.6%, 2017년 6.8%, 2018년 6.1%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다가, 2019년에는 307건 가운데 5건으로 1.6%까지 낮아졌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4%포인트가 감소하였고, 마지막 연도에 다시 약 4%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다만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의 수 자체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체로 20건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9년 5건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연간 선고 건수는 181건에서 307건으로 증가하였다.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의 수가 크게 변하지 않은 2018년까지는 전체 선고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비중이 낮아졌고, 건수 자체가 뚜렷이 감소하면서 비중도 함께 낮아진 연도는 2019년뿐이었다. [그림 22]에서 보듯 2019년은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 어느 시점에서 보아도 종결 비중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느 연도보다 낮았다.

〈표 12〉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개월 이하	0(0.0)	1(0.4)	0(0.0)	2(0.8)	0(0.0)	1(0.3)	0(0.0)
4개월	1(0.6)	1(0.4)	0(0.0)	3(1.1)	2(0.7)	4(1.4)	0(0.0)
5개월	11(6.1)	6(2.6)	7(2.5)	4(1.5)	9(3.1)	0(0.0)	1(0.3)
6개월	7(3.9)	15(6.4)	15(5.3)	11(4.2)	9(3.1)	13(4.4)	4(1.3)
7개월	13(7.2)	20(8.5)	23(8.1)	17(6.5)	22(7.5)	21(7.1)	13(4.2)
8개월	19(10.5)	18(7.7)	28(9.9)	39(14.8)	24(8.2)	39(13.2)	23(7.5)
9개월	13(7.2)	28(11.9)	38(13.4)	28(10.6)	25(8.5)	30(10.1)	25(8.1)
10개월	24(13.3)	29(12.3)	27(9.5)	21(8.0)	23(7.8)	30(10.1)	33(10.7)
11개월	21(11.6)	23(9.8)	22(7.8)	29(11.0)	31(10.5)	30(10.1)	37(12.1)
12개월	16(8.8)	10(4.3)	23(8.1)	19(7.2)	31(10.5)	23(7.8)	35(11.4)
13개월	12(6.6)	12(5.1)	19(6.7)	10(3.8)	21(7.1)	14(4.7)	25(8.1)
14개월	10(5.5)	13(5.5)	13(4.6)	15(5.7)	16(5.4)	14(4.7)	28(9.1)
15개월	4(2.2)	6(2.6)	13(4.6)	5(1.9)	13(4.4)	14(4.7)	13(4.2)
16개월	8(4.4)	10(4.3)	11(3.9)	5(1.9)	13(4.4)	8(2.7)	13(4.2)
17개월	3(1.7)	6(2.6)	8(2.8)	7(2.7)	5(1.7)	9(3.0)	4(1.3)
18개월	5(2.8)	7(3.0)	3(1.1)	10(3.8)	10(3.4)	7(2.4)	9(2.9)
1.5~2년	9(5.0)	18(7.7)	24(8.5)	25(9.5)	26(8.8)	29(9.8)	28(9.1)
2~3년	4(2.2)	9(3.8)	8(2.8)	11(4.2)	11(3.7)	9(3.0)	12(3.9)
3년 이상	1(0.6)	2(0.9)	1(0.4)	2(0.8)	2(0.7)	1(0.3)	4(1.3)
기간 미상	-	1(0.4)	-	-	1(0.3)	-	-
합계	181(100)	235(100)	283(100)	263(100)	294(100)	296(100)	307(100)



[그림 22]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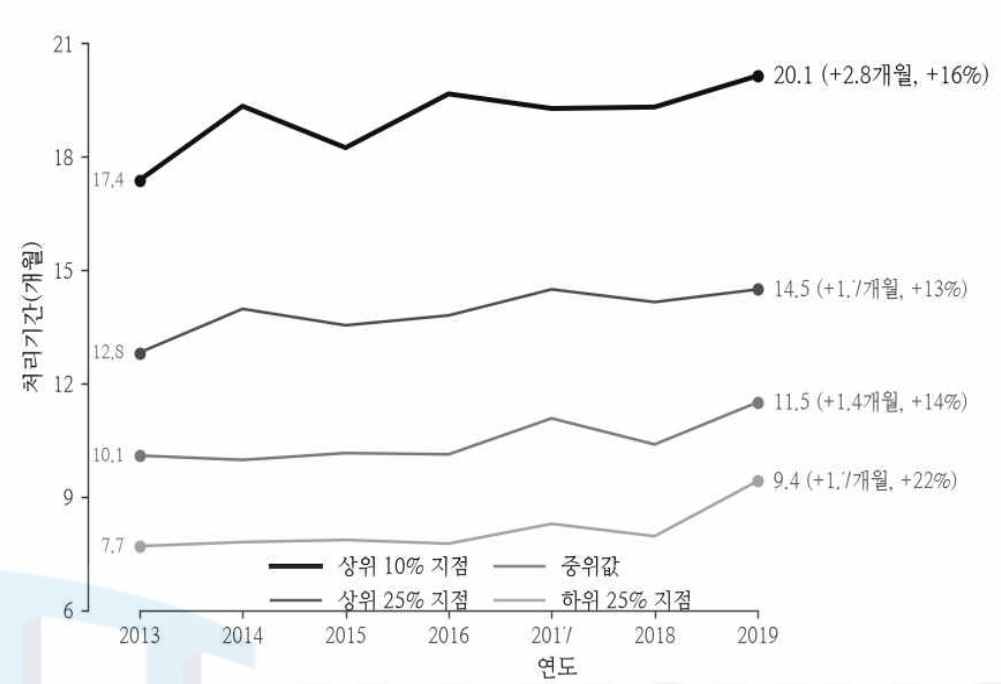
2) 분위별 처리기간의 이동

종결된 사건이 전체의 일정한 비중(예컨대 절반)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처리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졌다. 분위수별 처리기간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가 〈표 13〉이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변화는 중위값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분위에서 함께 나타났다.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2019년에는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모든 분위의 처리기간이 2013년보다 길었다. 평균 처리기간도 약 1.9개월 증가하였다. 연도별 분위 지점의 처리기간을 함께 나타낸 [그림 23]에서 하위 25%, 중위값, 상위 25% 및 상위 10% 지점의 처리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길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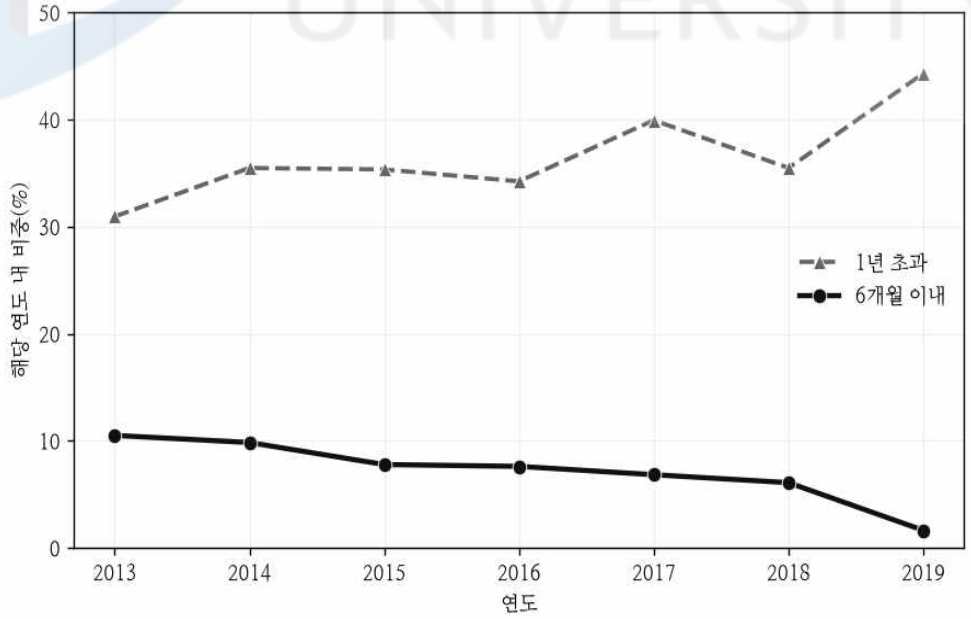
처리기간이 길어진 폭은 상위 10% 지점에서만 유독 컸다. 분석 대상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 연도 사이에 하위 25% 지점은 약 1.7개월, 중위값은 약 1.4개월, 상위 25% 지점은 약 1.7개월 길어지는 데 비해, 상위 10% 지점은 약 2.8개월 길어졌다. 6개월 이내 종결 비중이 감소하고 1년 초과 종결 비중이 증가하는 두 흐름을 함께 나타낸 [그림 24]에서 분포가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13〉 분위수별 처리기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2019 변화량(개월)	2013~2019 변화율(%)
하위 10%	5.9	6.0	6.3	6.3	6.6	6.7	7.6	+1.7	(+28.8)
하위 25%	7.7	7.8	7.9	7.8	8.3	8.0	9.4	+1.7	(+22.1)
중위값	10.1	10.0	10.2	10.1	11.1	10.4	11.5	+1.4	(+13.8)
상위 25%	12.8	14.0	13.5	13.8	14.5	14.2	14.5	+1.7	(+13.3)
상위 10%	17.4	19.3	18.2	19.7	19.3	19.3	20.1	+2.8	(+16.1)
전체 평균	**11.1**	**11.7**	**11.7**	**11.9**	**12.3**	**11.8**	**13.0**	**+1.9**	**(+17.1)**



[그림 23] 연도별 분위수별 처리기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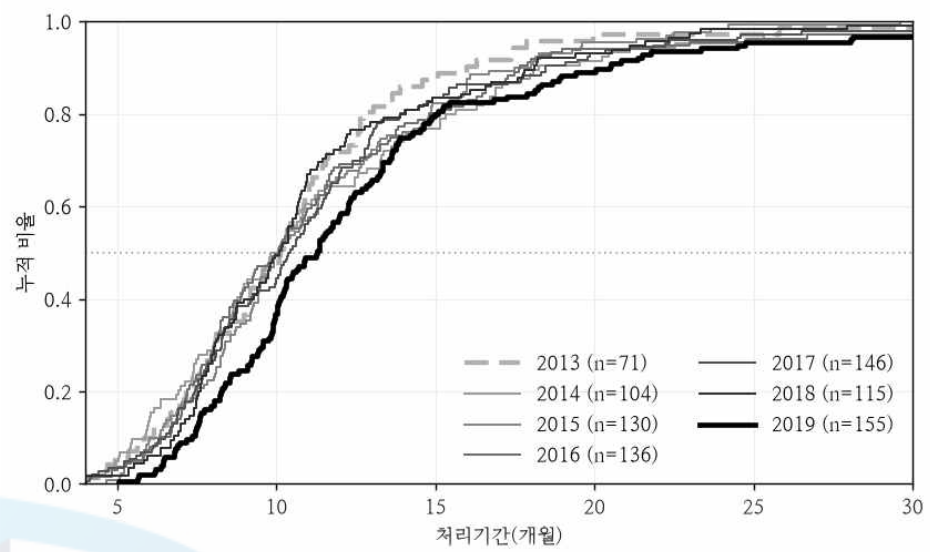
[그림 24] 6개월 이내·1년 초과 종결 사건 비중의 연도별 추이.

3) 처리기간 분포의 이동

처리기간 분포의 이동은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았다. 〈표 14〉·[그림 25]에 따르면, 사건 수가 전체의 약 46%로 가장 많은 유형인 떨어짐만 따로 보아도 6개월 이내 종결 비중이 2013년 약 10%에서 2019년 약 2%로 감소하고, 떨어짐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도 같은 기간 약 11%에서 약 1%로 감소하였다. 즉 분포의 이동은 어느 한 유형에 치우친 변화가 아니었다. 중위값도 떨어짐에서는 2013년 약 10개월에서 2019년 약 11개월로 길어졌고, 상위 10% 지점의 경계는 약 16개월에서 약 20개월로 더 크게 길어졌다. 제4절에서 보았듯 분포의 이동은 세 업종 모두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도 않았다.

〈표 14〉 떨어짐 사고의 연도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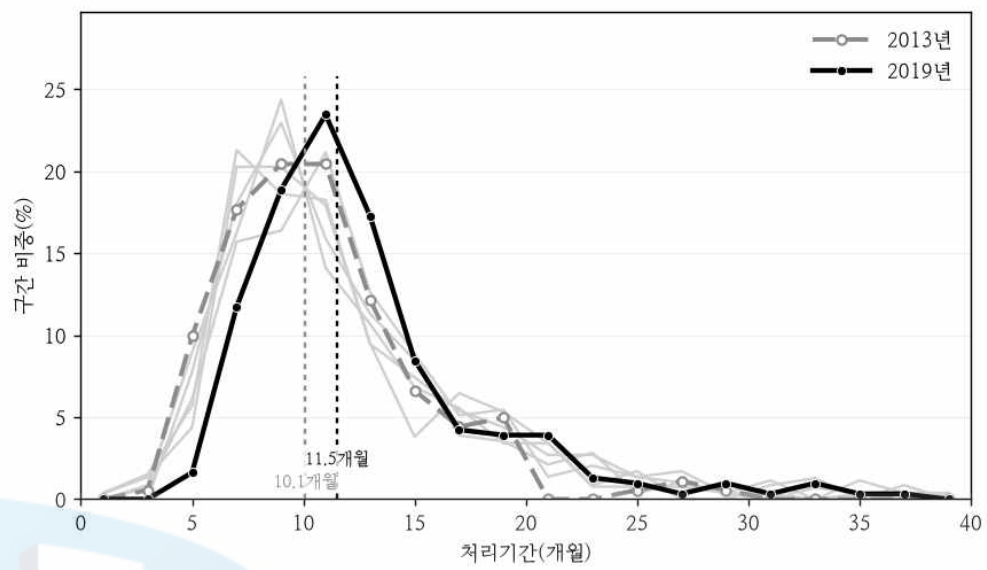
처리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1(0.7)	0(0.0)	0(0.0)	0(0.0)	1(0.1)
4개월	1(1.4)	1(1.0)	0(0.0)	1(0.7)	0(0.0)	2(1.7)	0(0.0)	5(0.6)
5개월	3(4.2)	4(3.8)	1(0.8)	3(2.2)	5(3.4)	0(0.0)	0(0.0)	16(1.9)
6개월	3(4.2)	9(8.7)	11(8.5)	5(3.7)	5(3.4)	5(4.3)	3(1.9)	41(4.8)
7개월	5(7.0)	8(7.7)	10(7.7)	10(7.4)	14(9.6)	8(7.0)	11(7.1)	66(7.7)
8개월	8(11.3)	9(8.7)	7(5.4)	19(14.0)	15(10.3)	17(14.8)	12(7.7)	87(10.2)
9개월	6(8.5)	14(13.5)	16(12.3)	18(13.2)	17(11.6)	14(12.2)	12(7.7)	97(11.3)
10개월	8(11.3)	7(6.7)	20(15.4)	10(7.4)	9(6.2)	11(9.6)	19(12.3)	84(9.8)
11개월	10(14.1)	11(10.6)	9(6.9)	14(10.3)	17(11.6)	20(17.4)	19(12.3)	100(11.7)
12개월	7(9.9)	4(3.8)	12(9.2)	13(9.6)	17(11.6)	7(6.1)	15(9.7)	75(8.8)
13개월	6(8.5)	4(3.8)	8(6.2)	3(2.2)	11(7.5)	6(5.2)	11(7.1)	49(5.7)
14개월	4(5.6)	7(6.7)	5(3.8)	8(5.9)	7(4.8)	2(1.7)	14(9.0)	47(5.5)
15개월	1(1.4)	2(1.9)	8(6.2)	4(2.9)	5(3.4)	4(3.5)	8(5.2)	32(3.7)
16개월	2(2.8)	4(3.8)	7(5.4)	3(2.2)	4(2.7)	1(0.9)	4(2.6)	25(2.9)
17개월	1(1.4)	5(4.8)	2(1.5)	6(4.4)	0(0.0)	3(2.6)	1(0.6)	18(2.1)
18개월	3(4.2)	3(2.9)	1(0.8)	6(4.4)	3(2.1)	3(2.6)	2(1.3)	21(2.5)
1.5~2년	1(1.4)	7(6.7)	11(8.5)	6(4.4)	11(7.5)	10(8.7)	15(9.7)	61(7.1)
2~3년	1(1.4)	3(2.9)	2(1.5)	5(3.7)	4(2.7)	2(1.7)	7(4.5)	24(2.8)
3년 이상	1(1.4)	2(1.9)	0(0.0)	1(0.7)	2(1.4)	0(0.0)	2(1.3)	8(0.9)
합계	**71**(100)	**104**(100)	**130**(100)	**136**(100)	**146**(100)	**115**(100)	**155**(100)	**857**(100)



[그림 25] 떨어짐 연도별 처리기간 누적분포.

각 연도의 처리기간 분포를 구간 비중으로 나타내면, 사건이 가장 많이 집중된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는 연도에 따라 달라졌다. 늦은 연도일수록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감소하고 18개월을 넘는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사건이 가장 많이 집중된 구간도 처리기간이 한 구간 더 긴 쪽으로 옮겨갔다. 사건이 집중되는 구간의 이동은 첫 연도와 마지막 연도의 구간 비중을 대비하여 제시한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위값은 2013년 약 10.1개월에서 2019년 약 11.5개월로 약 1.4개월 길어졌다. 신속히 처리되던 사건은 크게 감소하고, 처리기간이 긴 사건은 다소 증가하면서, 분포가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이동하였다. 1년을 넘겨 종결되는 사건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도 같은 변화의 일부이다. 다만 중간 연도에는 등락이 있어, 사건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구간과 중위값의 이동은 6개월 이내 구간의 축소나 1년 초과 종결의 증가만큼 연도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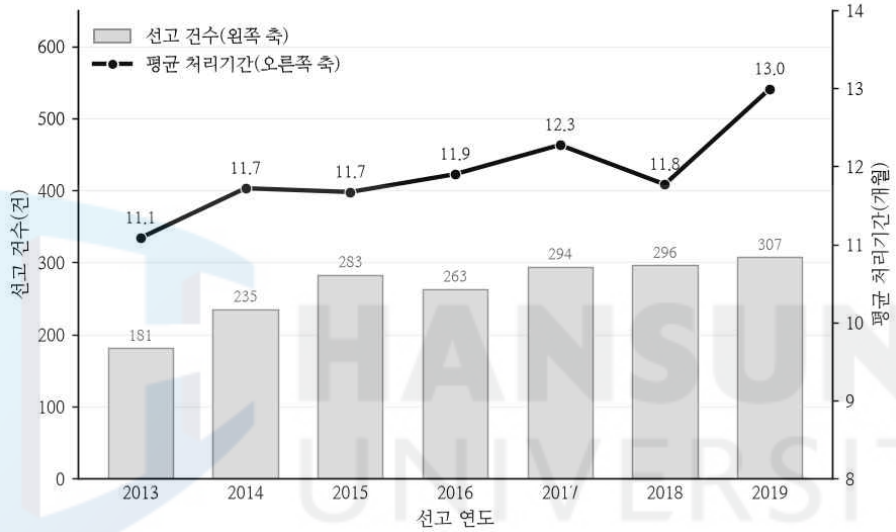
[그림 26] 2013년과 2019년 처리기간 구간 비중.

4) 선고 건수의 변화와 처리기간의 변화

연도별 선고 건수의 변화를 처리기간 분포의 변화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본다. 분석 대상 사망사건의 연간 선고 건수는 2013년 181건에서 2019년 307건으로, 2016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였다. 연도별 선고 건수는 〈표 12〉의 합계와 같다. 같은 기간 처리기간의 분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본 대로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이동하였다. 선고 건수가 증가한 기간에 처리기간의 분포도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이동했으므로, 사건 수가 증가하여 처리기간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변화의 시기를 비교하면 추이가 일치하지 않았다. 선고 건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1건에서 283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처리기간은 〈표 13〉에 보인 어느 분위에서도

1개월 넘게 길어지지 않았다. 중위값은 약 0.1개월, 상위 10% 지점은 약 0.8개월 길어지는 데 그쳤다. 반대로 분포의 이동이 가장 컸던 2019년의 선고 건수는 2018년보다 1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시기와 분포가 크게 이동한 시기는 서로 어긋났다. 연도별 선고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을 함께 나타낸 결과는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연도별 선고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

다만 제2장에서 밝힌 대로 연도별 건수에는 실제 사건의 수뿐 아니라 판결서의 수집·공개 범위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고 건수의 증가를 산업재해 발생 추이나 수사·재판 부담의 지표로 해석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두 변화가 어긋난다는 관찰을 사건 수가 증가하여 처리기간이 길어졌다는 해석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삼지도 않는다. 본 연구에서 건수는 각 연도의 분포를 파악하는 표본의 크기로만 의미를 가진다. 선고 건수와 처리기간의 관계는 실제 사건 수와 수사·재판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다음에야 밝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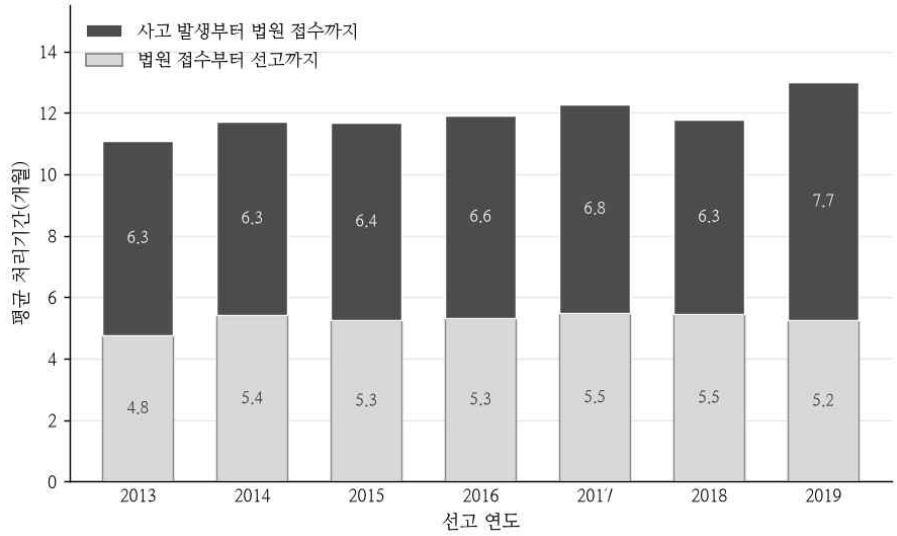
5) 법원 사건 접수 전후 구간의 변화

선고 건수와 처리기간의 관계는 판결서 밖의 자료 없이는 더 밝히기 어려우나, 처리기간이 어느 구간에서 길어졌는지는 판결서만으로 한 단계 더 구분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사고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으로, 처리기간 안에는 수사와 공소제기를 거쳐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기까지의 구간과, 접수부터 선고까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차례로 들어 있다. 판결서에는 수사나 공소제기의 날짜가 나타나지 않지만, 제2절에서 사건 유형을 비교할 때와 같이 1심 사건번호에 나타난 법원의 접수연도를 이용하면 연 단위로는 두 구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누어 보면,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구간은 분석 대상 기간에 뚜렷이 길어지지 않았다. 각 연도에 선고된 사건 가운데 같은 연도에 접수된 사건의 비중은 2013년 66.3%, 2019년 63.5%로 분석 대상 기간 내내 약 57~66% 사이에서 등락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추세는 없었다. 선고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접수된 사건까지 합하면 매년 96%를 넘었다. 선고된 연도와 접수된 연도의 차이를 평균하여도 2013년 0.35년, 2019년 0.39년으로 비슷하였다.

같은 기간 처리기간 전체는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이동하였다. 증가 폭의 대부분은 사고 발생부터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기까지의 구간에서 나타났다. 연 단위로 보면 사고가 발생한 연도와 사건이 접수된 연도의 차이는 평균 0.56년에서 0.66년으로 증가한 반면, 접수된 연도와 선고된 연도의 차이는 매년 0.35년에서 0.46년 사이에서 등락할 뿐 한 방향으로 길어지는 추세가 없었다. 두 구간의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누적하여 나타낸 결과는 [그림 28]과 같다.[12)]

12) 접수 시점을 각 연도의 중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사고 발생부터 접수까지의 평균은 2013년 약 6.3개월에서 2019년 약 7.7개월로 증가하는 데 비해,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평균은 약 4.8개월에서 약 5.2개월로 큰 차이가 없다. 이 값은 사건이 연도 안에 고르게 접수되었다고 가정한 근사치이며, 1심 선고연도별 묶음이므로 연도별로 사건의 구성이 달라진 영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림 28] 법원 접수 전후 두 구간의 평균 처리기간.

제1항에서 살펴본 6개월 이내 종결 사건의 감소도, 처리기간이 증가한 폭의 대부분이 사고 발생부터 법원 접수까지의 구간에서 나타났다는 관찰과 부합한다. 사고 발생부터 6개월 안에 선고된 사건은 수사와 공소제기도 6개월 안에 끝난 사건이다. 6개월 안에 선고된 사건이 분석 대상 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음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두 구간의 구분은 접수 시점을 연 단위로만 파악할 수 있는 근사치이며, 사고 발생부터 접수까지의 구간 안에서 수사와 송치, 공소제기의 각 단계에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는 구분하지 못한다. 사고 발생부터 접수까지의 구간이 길어진 사정을 밝히는 일에도 판결서 밖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후속 과제로 남긴다.

사고유형, 업종, 규모 및 연도에 따라 나누어 본 결과에서, 서로 비슷한 분포와 구별되는 두 가지가 드러난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고유형에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 분포에서 벗어나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치우친 폭발·파열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포가 처리기간이 긴 쪽으로 이동한 변화, 곧 분포의 이동이다. 폭발·파열의 치우침과 분포의 이동이 처리기간이 짧은 사건(6개월 이내)과 긴 사건(1년 초과)의 구성에서 다시 나타나는 양상은 제7절에서 살펴본다.

제 7 절 처리기간이 짧은 사건(6개월 이내)과 긴 사건(1년 초과)의 구성

짧은 사건과 긴 사건의 경계는 6개월과 1년으로 정하였다. 6개월은 제6절에서 살핀 6개월 이내 구간의 경계이고, 1년은 제2절에서 보았듯 종결되는 사건이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사망사건 전체의 약 63%는 1년 안에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1년을 넘긴 사건을 긴 사건으로 보았다.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 127건의 구성은 사망사건 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가운데 떨어짐이 63건으로 49.6%,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이 119건으로 93.7%를 차지하였는데, 사망사건 전체에서의 비중도 각각 46.1%와 93.4%로 비슷하였다. 다만 일부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사망사건 전체와 차이가 있었다. 제3절에서 처리기간이 긴 쪽에 치우쳐 있던 폭발·파열은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 가운데 1건뿐이었고, 무너짐·매몰도 3건에 그쳤다. 즉 처리가 신속한 사건은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의 비중은 제6절에서 보았듯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짧은 사건의 두드러진 특징은 특정한 사건 종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이 낮아졌다는 시간에 따른 변화였다.

처리기간이 1년을 넘긴 사건은 687건으로, 사망사건 전체의 약 37%였다. 긴 사건을 사고유형과 사망자 수로 나누어 짧은 사건과 비교한 결과는 〈표 15〉·[그림 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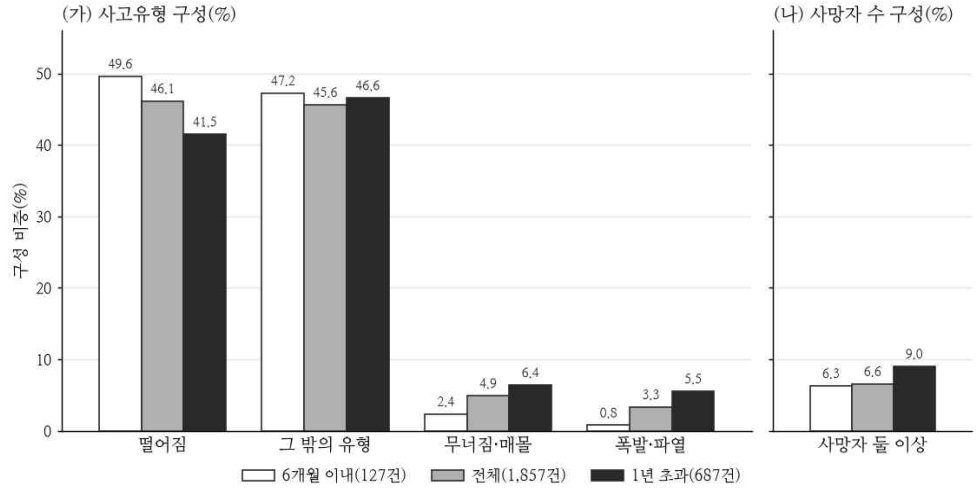
긴 사건의 구성 역시 특정한 종류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떨어짐이 285건으로 4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이 625건으로 91.0%를 차지하였다. 즉 처리기간이 긴 사건에서도 한 사람이 떨어져 사망한 가장 흔한 형태의 사건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긴 처리기간이 특정한 사고유형이나 대형 사고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건의 구성은 조금씩 달라졌다. 사망사건 전체에서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은 약 6.6%, 폭발·파열 사건은 약 3.3%를 차지하였는데, 처리기간이 긴 구간일수록 두 부류의 비중이 사망사건 전체에서의 비중보다 높아졌다. 처리기간 구간별로 두 부류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은 [그림 30]과 같다.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의 비중은 1년을 조금 넘긴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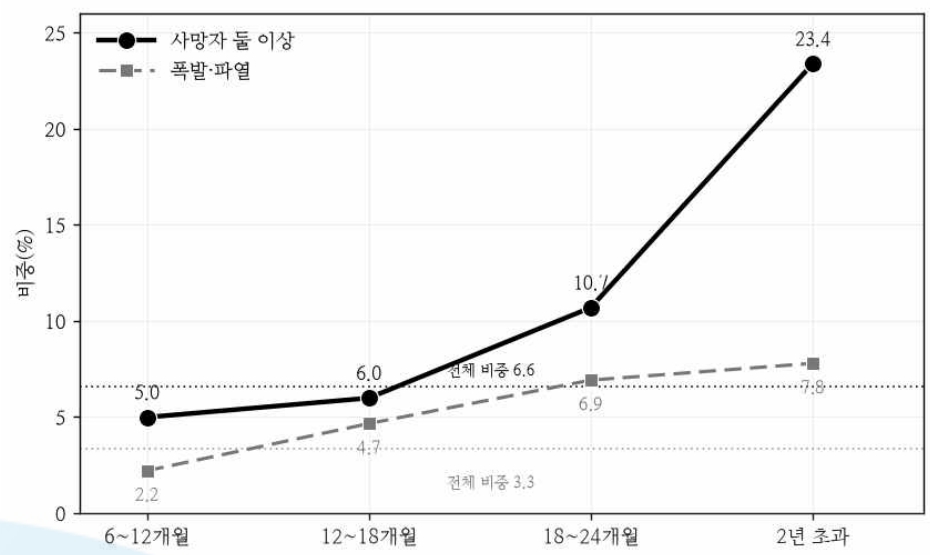
에서 약 6%였지만 2년을 넘긴 사건 77건 가운데에서는 약 23%로 높아졌고, 폭발·파열 사건의 비중도 처리기간이 긴 구간일수록 같은 방향으로 높아졌다. 사고유형을 기준으로 보아도, 폭발·파열은 62건 가운데 38건으로 61.3%가 1년을 넘겼고, 무너짐·매몰은 91건 가운데 44건으로 48.4%가 1년을 넘겼다. 두 유형 모두 1년을 넘긴 비중이 사망사건 전체에서 1년을 넘긴 비중인 약 37%보다 높았다. 폭발·파열과 무너짐·매몰,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은 한 사고에서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거나 다수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성격을 같이하는 하나의 부류를 이룬다.

〈표 15〉 처리기간 6개월 이내·1년 초과 사건의 사고유형·사망자 수별 구성

구분	6개월 이내	1년 초과	전체
떨어짐	63(49.6)	285(41.5)	857(46.1)
물체에 맞음	17(13.4)	84(12.2)	230(12.4)
끼임	17(13.4)	65(9.5)	190(10.2)
깔림·뒤집힘	8(6.3)	54(7.9)	142(7.6)
무너짐·매몰	3(2.4)	44(6.4)	91(4.9)
폭발·파열	1(0.8)	38(5.5)	62(3.3)
그 밖	18(14.2)	117(17.0)	285(15.3)
사망자 1명	119(93.7)	625(91.0)	1735(93.4)
사망자 둘 이상	8(6.3)	62(9.0)	122(6.6)
합계	**127(100)**	**687(100)**	**1,857(100)**



[그림 29] 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건과 1년 초과인 사건의 구성 대비.



[그림 30] 처리기간 구간별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과 폭발·파열 사건의 비중.

그러나 〈표 15〉에서 보듯 1년을 넘긴 사건 687건 가운데 폭발·파열은 38건으로 5.5%, 무너짐·매몰은 44건으로 6.4%,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은 62건으로 9.0%를 차지할 뿐이었다. 세 비중을 그대로 더하여도 약 21%였고, 세 부류 가운데 둘 이상에 함께 속하는 사건이 있어 실제 비중은 이보다 낮았다. 즉 1년을 넘긴 사건의 약 80%는 세 부류 밖의 사건이었다. 폭발·파열과 무너짐·매몰,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은 사건 수가 적어, 세 부류가 처리기간이 긴 쪽에 치우친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1년을 넘긴 사건의 비중은 분석 대상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 연도 사이에 높아졌다. 제6절에서 보았듯 1년 안에 종결된 비중은 2013년 약 69%에서 2019년 약 56%로 낮아졌다. 즉 1년을 넘긴 비중은 약 31%에서 약 44%로 높아졌다. 18개월을 넘긴 비중도 같은 기간 약 8%에서 약 14%로 증가하였다.

1년을 넘긴 사건의 증가는 세 부류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떨어짐만 보아도 90%가 종결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13년 약 16개월에서 2019년 약 20개월로 증가하였고, 1년을 넘긴 사건의 약 80%가 세 부류 밖의 사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긴 사건의 증가를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집중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짧은 사건의 감소와 긴 사건의 증가는 별개의 두 현상이 아니라, 사망사건 전반에서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하나의 변화가 6개월 이내 구간과 1년 초과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리기간이 짧은 사건과 긴 사건의 구성은 모두 사망사건 전체와 비슷하였으나, 사망사건 전체와 차이가 난 지점은 서로 달랐다.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에는 폭발·파열과 무너짐·매몰이 거의 없었고, 1년을 넘긴 사건에서는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과 폭발·파열 사건의 비중이 높아졌다. 즉 처리기간의 장단은 사건의 종류로 구분되지 않았고, 종류에 따른 차이는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과 처리기간이 가장 긴 일부 사건에서만 나타났다. 처리가 신속한 사건에서도 장기간이 소요된 사건에서도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사고유형 가운데에는 떨어짐이 가장 많았다.

짧은 사건의 감소와 긴 사건의 증가는 제6절에서 살펴본 시간에 따른 변화와 연관되어 있고, 가장 긴 사건에서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과 폭발·파열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제5절에서 살펴본 사건의 규모와 연관되어 있다. 사망자가 1명인 가장 흔한 형태이면서도 1년을 넘긴 사건 대부분이 어떤 사정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었는지는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 알 수 없으며, 후속 과제로 남긴다.

제 8 절 종 합

산업재해 사망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사건의 특성이 달라져도 대체로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사고유형으로 나누어도, 업종으로 나누어도, 사건의 규모로 나누어도, 특정 기간 안에 종결된 사건의 비중, 곧 처리기간의 누적분포는 서로 비슷하였다.

공통된 분포에서 뚜렷이 벗어나는 부류는 사고유형 가운데 폭발·파열이었다. 사고유형이 폭발·파열인 사건은 사망사건 1,857건 가운데 62건이었다. 폭발·파열 62건 가운데 절반가량은 폭발·파열을 제외한 유형과 비슷한 기간에 처리되었다. 그러나 [그림 31]에서 보듯 18개월까지 종결된 비중은 폭발·파열을 제외한 유형 전체(1,795건)가 약 88%인 데 비해 폭발·파열은 약 73%로 낮았다. 즉 18개월을 넘는 비중은 폭발·파열이 약 27%로, 폭발·파열 외 유형의 약 1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비중 차이는 폭발·파열이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 안에서 비교해도 유지되었다.

제7절에서 보았듯 처리기간이 특히 긴 사건 가운데에서는 사망자가 둘 이상인 사건의 비중도 높아졌다. 폭발·파열 또한 한 사고에서 다수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었다. 결국 처리기간이 특히 긴 사건에서는 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많은 사건, 곧 규모가 큰 사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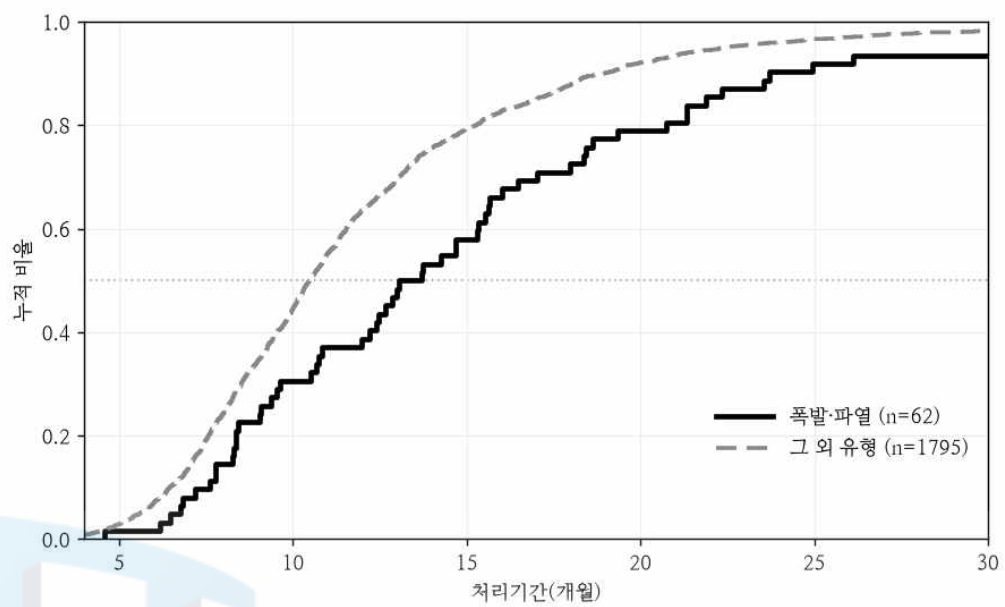
연도에 따라서는 분포가 달라졌다. 분석 대상 기간의 늦은 연도일수록 처리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길어지는 변화는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감소한 데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의 비중은 분석 대상 기간 초기 약 10%에서 마지막 연도에는 2% 아래로 낮아지고, 18개월을 넘긴 사건의 비중은 약 8%에서 약 14%로 증가하였다. 첫 연도와 마지막 연도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즉 6개월 안에 종결된 사건의 감소와 18개월을 넘긴 사건의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서, 사망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변화는 세 업종 모두에서 나타났다.

처리기간은 1심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를 이용하면 사고 발생부터 법원 접수까지와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접수부터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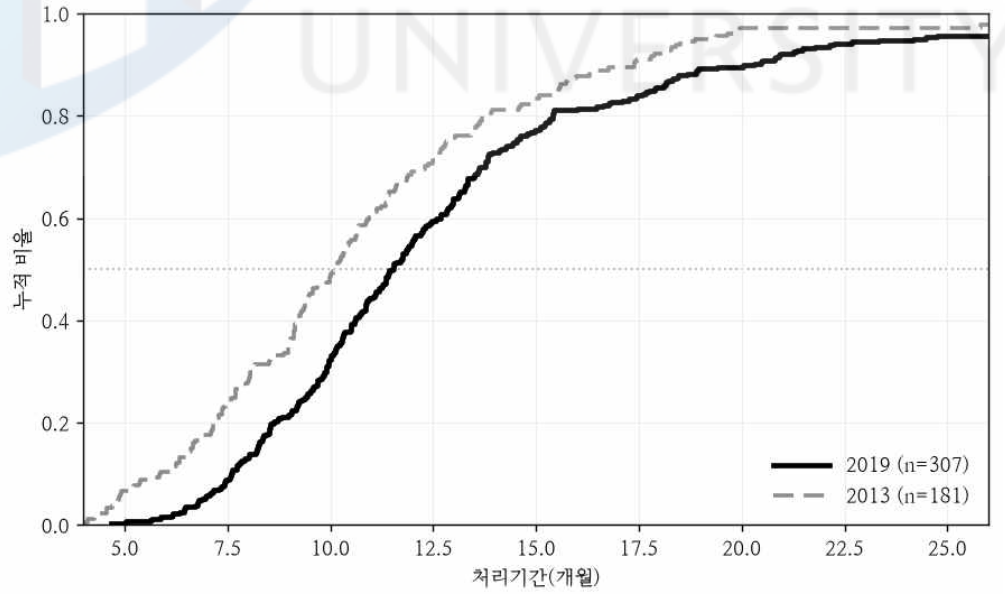
까지의 구간은 분석 대상 기간에 뚜렷이 길어지지 않아, 선고된 연도와 접수된 연도의 차이는 평균 0.35년에서 0.39년으로 비슷하였다. 증가 폭의 대부분은 사고 발생부터 접수까지의 구간에서 나타나, 사고가 발생한 연도와 접수된 연도의 차이는 평균 0.56년에서 0.66년으로 증가하였다. 접수 시점은 연 단위로만 파악되는 근사치여서, 접수 전의 구간 안에서 수사, 송치 및 공소제기에 각각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는 구분하지 못한다.

종합하면, 처리기간의 분포에서 관찰된 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였다. 첫째, 사고유형, 업종 및 사건 규모 가운데 어느 기준으로 나누어도 처리기간의 분포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서로 비슷한 분포에서 벗어난 부류는 폭발·파열 등 일부에 그쳤다. 차이 또한 처리기간이 18개월을 넘는 긴 구간에 국한되었다. 제7절에서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과 1년을 넘긴 사건의 구성을 다시 살펴보아도, 어느 쪽이든 사망자가 1명인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사고유형으로는 떨어짐이 가장 많았다. 폭발·파열에서 확인된 차이는 시간에 따라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사고유형이라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사건별로 나타난 차이였다.

둘째,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사망사건의 처리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연 단위로 나누어 보면, 길어진 폭의 대부분은 재판 단계가 아니라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기 전의 구간에 있었다. 즉 처리기간이 길어진 것은 시간에 따라 나타난 변화이다. 사고유형에 따라 사건들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와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사건 전반에서 나타난 변화는 서로 다른 현상이므로, 하나의 현상으로 묶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림 31] 폭발·파열과 그 외 유형의 처리기간 누적분포.



[그림 32] 2013년과 2019년 처리기간 누적분포.

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관련 판결서를 수집하고, 그중 위반죄가 실제로 적용된 1심 판결서 2,587건을 대상으로 범죄가 인지된 시점부터 1심 선고일까지 소요된 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을 분석하였다. 처리기간의 종료 시점은 1심 선고일로 명확하지만, 시작 시점인 법 위반이 인지된 시점 또는 수사가 개시된 시점은 판결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판결서에서 시작 시점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망·부상 사고의 발생일, 감독 시점 등을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처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2,531건 가운데 약 50%는 처리기간이 10.5개월 이내였다. 약 25%는 8개월 이내였으며, 75%는 14.5개월 이내였고, 90%가 종결되기까지는 약 21개월이 소요되었다. 처리기간 구간별로 보면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216건으로 약 8.5%였고,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1,547건으로 약 61%, 2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2,370건으로 약 94%였으며, 2년을 초과한 사건은 161건으로 약 6%였다.

둘째, 판결서를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 부상사고와 관련된 것, 그 외의 것으로 분류한 결과 사망사고 관련 사건은 1,859건, 부상사고 관련 사건은 268건, 그 외 감독 등에 의한 사건은 460건이었다. 유형별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50%가 처리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부상사고 관련 사건이 약 15개월로 가장 길었고, 사망사고 관련 사건은 약 10.5개월, 감독 등에 의한 사건은 약 9개월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사법처리의 어느 단계에서 처리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판결서의 1심 사건번호에 나타난 법원 접수연도를 공소제기 시점의 기준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 공소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은 세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형 간 처리기간의 차이는 공소제기 이전의 단계, 즉 사고 발생부터 공소제기까지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지 시점과 공소제기 시점의 연도가 같은 사건의

비중은 사망사건이 45.1%, 감독 등 사건이 46.6%로 비슷하였으나 부상사건은 23.8%에 그쳤고, 부상사건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연도와 그 이듬해를 넘겨서야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19.2%에 이르렀다.

셋째, 사망사고와 관련된 1,857건의 25%는 사고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약 8개월 이내에 종결되었고, 50%는 약 10.5개월, 75%는 약 14개월 이내에 종결되었으며, 90%가 종결되기까지는 약 19개월이 소요되었다.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127건으로 약 7%였고,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1,170건으로 약 63%, 1년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1,621건으로 약 87%였다.

넷째, 사망사고 관련 사건의 처리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설업, 제조업, 그 외 산업으로 나누어 본 결과 50%가 종결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0개월에서 11개월 사이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1년 6개월을 넘긴 비중은 9%에서 14% 사이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업종 간 차이보다는 사고유형 구성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고유형 가운데 폭발·파열 사고(62건)는 사건의 50%가 종결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어 다른 유형(약 9~12개월)에 비해 처리기간이 길었다. 폭발·파열 사고는 1년 6개월을 넘긴 사건도 해당 유형의 약 27%에 달하여 그 외 유형 전체(약 12%)보다 처리기간이 긴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여섯째,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건(122건)도 처리기간이 1년 6개월을 넘긴 비중이 약 29%로, 사망자가 1명인 사건(약 12%)보다 처리기간이 긴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일곱째,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사망사고 관련 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의 비중은 2013년 10.5%에서 2019년 1.6%로, 1년 이내에 종결된 비중은 약 69%에서 약 56%로 낮아졌으며, 1년 6개월을 넘긴 비중은 약 8%에서 약 14%로 높아졌다. 이러한 증가는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모든 분위에서 나타나 7년 사이 증가율은 약 13~29%였으며, 1심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나누어 보면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구간은 평균 0.35년에서 0.39년으로 비슷하였던 반면 사고 발생부터 접수까지의 구간은 평균 0.56년에서 0.66년으로 늘어, 증가 폭의 대부분은 재판에 이르기 전의 구간에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1심 판결까지의 처리기간은 업종이나 사고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개월이 소요되었다. 통상 사고 조사와 수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수일에서 수주 정도이고 훈령상 수사 기한도 원칙적으로 2개월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비해 매우 길다. 판결서 검토 과정에서 수사 단계의 사고 조사보다 상세한 사실 조사가 재판에서 새로 이루어진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1심 판결이 대부분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사법처리는 그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HANSUNG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양성필. (20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 분석 및 그 함의. 『아주법학』, 18(2), 75-110.

이진국, 김성룡, 양승국. (20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울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진국, 양승국. (20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임철희. (2022). 산업안전형법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성과 조직화책임. 『형사정책연구』, 33(3), 1-30.

전재경. (2000).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울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형배. (2019).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분석』. 울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채창근. (2015).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위반 사례와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국외문헌

Christina Mischke, Jos H Verbeek, Jenny Job, Thais C Morata, Anne Alvesalo-Kuusi, Kaisa Neuvonen, Simon Clarke, Robert I Pedlo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nforcement tools for preventing occupational diseases and injuries,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3 Aug 30

부 록

아래는 사고유형별로 처리기간을 업종에 따라 나눈 상세 분포이다. 본문 제3장 제3절의 사고유형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표본이 적은 유형은 분포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떨어짐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1(0.2)	0(0.0)	1(0.1)
4개월	3(3.5)	2(0.3)	0(0.0)	5(0.6)
5개월	2(2.3)	13(2.0)	1(0.9)	16(1.9)
6개월	4(4.7)	33(5.0)	4(3.6)	41(4.8)
7개월	1(1.2)	61(9.2)	4(3.6)	66(7.7)
8개월	11(12.8)	61(9.2)	15(13.5)	87(10.2)
9개월	7(8.1)	80(12.1)	10(9.0)	97(11.3)
10개월	5(5.8)	69(10.5)	10(9.0)	84(9.8)
11개월	14(16.3)	79(12.0)	7(6.3)	100(11.7)
12개월	8(9.3)	61(9.2)	6(5.4)	75(8.8)
13개월	5(5.8)	34(5.2)	10(9.0)	49(5.7)
14개월	8(9.3)	29(4.4)	10(9.0)	47(5.5)
15개월	2(2.3)	23(3.5)	7(6.3)	32(3.7)
16개월	3(3.5)	16(2.4)	6(5.4)	25(2.9)
17개월	1(1.2)	14(2.1)	3(2.7)	18(2.1)
18개월	2(2.3)	14(2.1)	5(4.5)	21(2.5)
1.5~2년	7(8.1)	45(6.8)	9(8.1)	61(7.1)
2~3년	3(3.5)	18(2.7)	3(2.7)	24(2.8)
3년 이상	0(0.0)	7(1.1)	1(0.9)	8(0.9)
합계	86(100)	660(100)	111(100)	857(100)

〈표 2〉 물체에 맞음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2(3.6)	0(0.0)	1(1.7)	3(1.3)
4개월	1(1.8)	1(0.9)	0(0.0)	2(0.9)
5개월	0(0.0)	3(2.6)	1(1.7)	4(1.7)
6개월	5(9.1)	2(1.7)	1(1.7)	8(3.5)
7개월	6(10.9)	8(6.8)	3(5.2)	17(7.4)
8개월	5(9.1)	7(6.0)	7(12.1)	19(8.3)
9개월	9(16.4)	9(7.7)	6(10.3)	24(10.4)
10개월	6(10.9)	13(11.1)	6(10.3)	25(10.9)
11개월	4(7.3)	10(8.5)	5(8.6)	19(8.3)
12개월	2(3.6)	11(9.4)	12(20.7)	25(10.9)
13개월	4(7.3)	10(8.5)	4(6.9)	18(7.8)
14개월	4(7.3)	4(3.4)	3(5.2)	11(4.8)
15개월	1(1.8)	4(3.4)	1(1.7)	6(2.6)
16개월	2(3.6)	5(4.3)	2(3.4)	9(3.9)
17개월	1(1.8)	5(4.3)	0(0.0)	6(2.6)
18개월	1(1.8)	6(5.1)	2(3.4)	9(3.9)
1.5~2년	1(1.8)	12(10.3)	1(1.7)	14(6.1)
2~3년	1(1.8)	5(4.3)	3(5.2)	9(3.9)
3년 이상	0(0.0)	2(1.7)	0(0.0)	2(0.9)
합계	55(100)	117(100)	58(100)	230(100)

HANSUNG UNIVERSITY

〈표 3〉 끼임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1(0.9)	0(0.0)	0(0.0)	1(0.5)
5개월	3(2.7)	1(2.0)	1(3.4)	5(2.6)
6개월	6(5.4)	1(2.0)	4(13.8)	11(5.8)
7개월	10(8.9)	1(2.0)	1(3.4)	12(6.3)
8개월	18(16.1)	6(12.0)	2(6.9)	26(13.6)
9개월	6(5.4)	5(10.0)	0(0.0)	11(5.8)
10개월	19(17.0)	5(10.0)	5(17.2)	29(15.2)
11개월	11(9.8)	2(4.0)	2(6.9)	15(7.9)
12개월	10(8.9)	2(4.0)	3(10.3)	15(7.9)
13개월	3(2.7)	8(16.0)	3(10.3)	14(7.3)
14개월	6(5.4)	4(8.0)	2(6.9)	12(6.3)
15개월	6(5.4)	3(6.0)	1(3.4)	10(5.2)
16개월	3(2.7)	1(2.0)	0(0.0)	4(2.1)
17개월	2(1.8)	1(2.0)	1(3.4)	4(2.1)
18개월	4(3.6)	0(0.0)	0(0.0)	4(2.1)
1.5~2년	3(2.7)	8(16.0)	4(13.8)	15(7.9)
2~3년	1(0.9)	2(4.0)	0(0.0)	3(1.6)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112(100)	50(100)	29(100)	191(100)

〈표 4〉 깔림·뒤집힘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1(2.3)	0(0.0)	0(0.0)	1(0.7)
5개월	1(2.3)	1(1.6)	0(0.0)	2(1.3)
6개월	3(7.0)	1(1.6)	2(4.5)	6(4.0)
7개월	5(11.6)	3(4.7)	4(9.1)	12(7.9)
8개월	7(16.3)	7(10.9)	3(6.8)	17(11.3)
9개월	5(11.6)	5(7.8)	5(11.4)	15(9.9)
10개월	5(11.6)	2(3.1)	6(13.6)	13(8.6)
11개월	4(9.3)	5(7.8)	2(4.5)	11(7.3)
12개월	3(7.0)	5(7.8)	7(15.9)	15(9.9)
13개월	1(2.3)	3(4.7)	6(13.6)	10(6.6)
14개월	2(4.7)	10(15.6)	2(4.5)	14(9.3)
15개월	1(2.3)	3(4.7)	1(2.3)	5(3.3)
16개월	1(2.3)	5(7.8)	1(2.3)	7(4.6)
17개월	0(0.0)	1(1.6)	2(4.5)	3(2.0)
18개월	0(0.0)	3(4.7)	1(2.3)	4(2.6)
1.5~2년	4(9.3)	9(14.1)	1(2.3)	14(9.3)
2~3년	0(0.0)	1(1.6)	1(2.3)	2(1.3)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43(100)	64(100)	44(100)	151(100)

〈표 5〉 무너짐·매몰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0(0.0)	0(0.0)	0(0.0)
6개월	0(0.0)	3(3.8)	0(0.0)	3(3.3)
7개월	0(0.0)	4(5.1)	0(0.0)	4(4.4)
8개월	0(0.0)	9(11.4)	1(20.0)	10(11.0)
9개월	1(14.3)	6(7.6)	0(0.0)	7(7.7)
10개월	0(0.0)	8(10.1)	1(20.0)	9(9.9)
11개월	1(14.3)	7(8.9)	0(0.0)	8(8.8)
12개월	1(14.3)	4(5.1)	1(20.0)	6(6.6)
13개월	0(0.0)	7(8.9)	0(0.0)	7(7.7)
14개월	0(0.0)	6(7.6)	0(0.0)	6(6.6)
15개월	1(14.3)	2(2.5)	0(0.0)	3(3.3)
16개월	0(0.0)	2(2.5)	0(0.0)	2(2.2)
17개월	0(0.0)	3(3.8)	1(20.0)	4(4.4)
18개월	0(0.0)	1(1.3)	0(0.0)	1(1.1)
1.5~2년	2(28.6)	5(6.3)	0(0.0)	7(7.7)
2~3년	0(0.0)	12(15.2)	1(20.0)	13(14.3)
3년 이상	1(14.3)	0(0.0)	0(0.0)	1(1.1)
합계	7(100)	79(100)	5(100)	91(100)

HANSUNG UNIVERSITY

〈표 6〉 부딪힘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1(5.0)	0(0.0)	0(0.0)	1(1.4)
5개월	1(5.0)	3(9.4)	1(5.6)	5(7.1)
6개월	1(5.0)	0(0.0)	0(0.0)	1(1.4)
7개월	2(10.0)	3(9.4)	0(0.0)	5(7.1)
8개월	2(10.0)	6(18.8)	0(0.0)	8(11.4)
9개월	2(10.0)	6(18.8)	2(11.1)	10(14.3)
10개월	5(25.0)	5(15.6)	1(5.6)	11(15.7)
11개월	2(10.0)	1(3.1)	3(16.7)	6(8.6)
12개월	1(5.0)	0(0.0)	2(11.1)	3(4.3)
13개월	1(5.0)	0(0.0)	0(0.0)	1(1.4)
14개월	0(0.0)	1(3.1)	1(5.6)	2(2.9)
15개월	1(5.0)	0(0.0)	0(0.0)	1(1.4)
16개월	1(5.0)	2(6.2)	2(11.1)	5(7.1)
17개월	0(0.0)	1(3.1)	0(0.0)	1(1.4)
18개월	0(0.0)	2(6.2)	1(5.6)	3(4.3)
1.5~2년	0(0.0)	1(3.1)	3(16.7)	4(5.7)
2~3년	0(0.0)	1(3.1)	2(11.1)	3(4.3)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20(100)	32(100)	18(100)	70(100)

HANSUNG UNIVERSITY

〈표 7〉 폭발·파열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1(2.5)	0(0.0)	0(0.0)	1(1.6)
6개월	0(0.0)	0(0.0)	0(0.0)	0(0.0)
7개월	3(7.5)	1(11.1)	0(0.0)	4(6.5)
8개월	2(5.0)	0(0.0)	2(15.4)	4(6.5)
9개월	3(7.5)	0(0.0)	2(15.4)	5(8.1)
10개월	3(7.5)	0(0.0)	2(15.4)	5(8.1)
11개월	4(10.0)	0(0.0)	0(0.0)	4(6.5)
12개월	1(2.5)	0(0.0)	0(0.0)	1(1.6)
13개월	2(5.0)	1(11.1)	3(23.1)	6(9.7)
14개월	3(7.5)	0(0.0)	0(0.0)	3(4.8)
15개월	3(7.5)	0(0.0)	0(0.0)	3(4.8)
16개월	5(12.5)	0(0.0)	0(0.0)	5(8.1)
17개월	2(5.0)	0(0.0)	0(0.0)	2(3.2)
18개월	0(0.0)	2(22.2)	0(0.0)	2(3.2)
1.5~2년	7(17.5)	2(22.2)	2(15.4)	11(17.7)
2~3년	1(2.5)	3(33.3)	1(7.7)	5(8.1)
3년 이상	0(0.0)	0(0.0)	1(7.7)	1(1.6)
합계	40(100)	9(100)	13(100)	62(100)

HANSUNG UNIVERSITY

〈표 8〉 감전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1(3.3)	0(0.0)	1(2.0)
5개월	1(7.7)	0(0.0)	0(0.0)	1(2.0)
6개월	0(0.0)	2(6.7)	0(0.0)	2(4.0)
7개월	1(7.7)	0(0.0)	0(0.0)	1(2.0)
8개월	1(7.7)	2(6.7)	1(14.3)	4(8.0)
9개월	1(7.7)	5(16.7)	0(0.0)	6(12.0)
10개월	1(7.7)	4(13.3)	0(0.0)	5(10.0)
11개월	1(7.7)	9(30.0)	1(14.3)	11(22.0)
12개월	2(15.4)	1(3.3)	1(14.3)	4(8.0)
13개월	1(7.7)	0(0.0)	0(0.0)	1(2.0)
14개월	2(15.4)	2(6.7)	0(0.0)	4(8.0)
15개월	0(0.0)	2(6.7)	0(0.0)	2(4.0)
16개월	1(7.7)	1(3.3)	1(14.3)	3(6.0)
17개월	1(7.7)	0(0.0)	0(0.0)	1(2.0)
18개월	0(0.0)	1(3.3)	0(0.0)	1(2.0)
1.5~2년	0(0.0)	0(0.0)	3(42.9)	3(6.0)
2~3년	0(0.0)	0(0.0)	0(0.0)	0(0.0)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13(100)	30(100)	7(100)	50(100)

HANSUNG UNIVERSITY

〈표 9〉 질식·산소결핍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1(7.7)	1(7.1)	2(5.4)
6개월	0(0.0)	0(0.0)	0(0.0)	0(0.0)
7개월	2(20.0)	0(0.0)	1(7.1)	3(8.1)
8개월	0(0.0)	1(7.7)	2(14.3)	3(8.1)
9개월	2(20.0)	0(0.0)	0(0.0)	2(5.4)
10개월	0(0.0)	0(0.0)	0(0.0)	0(0.0)
11개월	4(40.0)	1(7.7)	0(0.0)	5(13.5)
12개월	1(10.0)	1(7.7)	4(28.6)	6(16.2)
13개월	1(10.0)	0(0.0)	0(0.0)	1(2.7)
14개월	0(0.0)	0(0.0)	1(7.1)	1(2.7)
15개월	0(0.0)	1(7.7)	0(0.0)	1(2.7)
16개월	0(0.0)	2(15.4)	1(7.1)	3(8.1)
17개월	0(0.0)	2(15.4)	0(0.0)	2(5.4)
18개월	0(0.0)	1(7.7)	2(14.3)	3(8.1)
1.5~2년	0(0.0)	3(23.1)	1(7.1)	4(10.8)
2~3년	0(0.0)	0(0.0)	1(7.1)	1(2.7)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10(100)	13(100)	14(100)	37(100)

HANSUNG UNIVERSITY

〈표 10〉 화재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0(0.0)	0(0.0)	0(0.0)
6개월	0(0.0)	0(0.0)	0(0.0)	0(0.0)
7개월	0(0.0)	1(7.1)	0(0.0)	1(4.2)
8개월	0(0.0)	1(7.1)	0(0.0)	1(4.2)
9개월	1(12.5)	1(7.1)	1(50.0)	3(12.5)
10개월	1(12.5)	1(7.1)	0(0.0)	2(8.3)
11개월	0(0.0)	5(35.7)	0(0.0)	5(20.8)
12개월	0(0.0)	0(0.0)	0(0.0)	0(0.0)
13개월	1(12.5)	2(14.3)	1(50.0)	4(16.7)
14개월	0(0.0)	2(14.3)	0(0.0)	2(8.3)
15개월	1(12.5)	0(0.0)	0(0.0)	1(4.2)
16개월	0(0.0)	0(0.0)	0(0.0)	0(0.0)
17개월	0(0.0)	0(0.0)	0(0.0)	0(0.0)
18개월	0(0.0)	0(0.0)	0(0.0)	0(0.0)
1.5~2년	3(37.5)	1(7.1)	0(0.0)	4(16.7)
2~3년	1(12.5)	0(0.0)	0(0.0)	1(4.2)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8(100)	14(100)	2(100)	24(100)

HANSUNG UNIVERSITY

〈표 11〉 역과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0(0.0)	0(0.0)	0(0.0)
6개월	0(0.0)	0(0.0)	1(20.0)	1(4.8)
7개월	0(0.0)	0(0.0)	0(0.0)	0(0.0)
8개월	3(33.3)	1(14.3)	0(0.0)	4(19.0)
9개월	2(22.2)	1(14.3)	1(20.0)	4(19.0)
10개월	1(11.1)	0(0.0)	2(40.0)	3(14.3)
11개월	1(11.1)	2(28.6)	0(0.0)	3(14.3)
12개월	0(0.0)	1(14.3)	0(0.0)	1(4.8)
13개월	0(0.0)	0(0.0)	0(0.0)	0(0.0)
14개월	1(11.1)	0(0.0)	0(0.0)	1(4.8)
15개월	1(11.1)	0(0.0)	0(0.0)	1(4.8)
16개월	0(0.0)	0(0.0)	0(0.0)	0(0.0)
17개월	0(0.0)	0(0.0)	0(0.0)	0(0.0)
18개월	0(0.0)	0(0.0)	0(0.0)	0(0.0)
1.5~2년	0(0.0)	2(28.6)	1(20.0)	3(14.3)
2~3년	0(0.0)	0(0.0)	0(0.0)	0(0.0)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9(100)	7(100)	5(100)	21(100)

HANSUNG UNIVERSITY

〈표 12〉 빠짐·익사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1(50.0)	1(7.7)	0(0.0)	2(10.0)
6개월	0(0.0)	0(0.0)	0(0.0)	0(0.0)
7개월	0(0.0)	2(15.4)	0(0.0)	2(10.0)
8개월	0(0.0)	1(7.7)	1(20.0)	2(10.0)
9개월	0(0.0)	0(0.0)	0(0.0)	0(0.0)
10개월	0(0.0)	0(0.0)	0(0.0)	0(0.0)
11개월	0(0.0)	0(0.0)	0(0.0)	0(0.0)
12개월	0(0.0)	0(0.0)	2(40.0)	2(10.0)
13개월	0(0.0)	0(0.0)	0(0.0)	0(0.0)
14개월	0(0.0)	1(7.7)	0(0.0)	1(5.0)
15개월	0(0.0)	1(7.7)	0(0.0)	1(5.0)
16개월	0(0.0)	1(7.7)	1(20.0)	2(10.0)
17개월	0(0.0)	0(0.0)	0(0.0)	0(0.0)
18개월	0(0.0)	1(7.7)	1(20.0)	2(10.0)
1.5~2년	1(50.0)	5(38.5)	0(0.0)	6(30.0)
2~3년	0(0.0)	0(0.0)	0(0.0)	0(0.0)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2(100)	13(100)	5(100)	20(100)

HANSUNG UNIVERSITY

〈표 13〉 이상온도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0(0.0)	0(0.0)	0(0.0)
6개월	0(0.0)	0(0.0)	0(0.0)	0(0.0)
7개월	0(0.0)	0(0.0)	0(0.0)	0(0.0)
8개월	2(18.2)	0(0.0)	0(0.0)	2(12.5)
9개월	1(9.1)	0(0.0)	1(100)	2(12.5)
10개월	0(0.0)	0(0.0)	0(0.0)	0(0.0)
11개월	1(9.1)	0(0.0)	0(0.0)	1(6.2)
12개월	1(9.1)	0(0.0)	0(0.0)	1(6.2)
13개월	0(0.0)	0(0.0)	0(0.0)	0(0.0)
14개월	2(18.2)	0(0.0)	0(0.0)	2(12.5)
15개월	0(0.0)	1(25.0)	0(0.0)	1(6.2)
16개월	1(9.1)	1(25.0)	0(0.0)	2(12.5)
17개월	0(0.0)	0(0.0)	0(0.0)	0(0.0)
18개월	0(0.0)	0(0.0)	0(0.0)	0(0.0)
1.5~2년	2(18.2)	2(50.0)	0(0.0)	4(25.0)
2~3년	1(9.1)	0(0.0)	0(0.0)	1(6.2)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11(100)	4(100)	1(100)	16(100)

HANSUNG UNIVERSITY

〈표 14〉 화학물질누출·접촉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0(0.0)	0(0.0)	0(0.0)
6개월	0(0.0)	0(0.0)	1(33.3)	1(6.7)
7개월	1(14.3)	0(0.0)	0(0.0)	1(6.7)
8개월	0(0.0)	0(0.0)	0(0.0)	0(0.0)
9개월	1(14.3)	0(0.0)	0(0.0)	1(6.7)
10개월	1(14.3)	0(0.0)	0(0.0)	1(6.7)
11개월	1(14.3)	1(20.0)	1(33.3)	3(20.0)
12개월	1(14.3)	0(0.0)	0(0.0)	1(6.7)
13개월	0(0.0)	0(0.0)	0(0.0)	0(0.0)
14개월	0(0.0)	0(0.0)	0(0.0)	0(0.0)
15개월	0(0.0)	0(0.0)	0(0.0)	0(0.0)
16개월	0(0.0)	0(0.0)	0(0.0)	0(0.0)
17개월	1(14.3)	0(0.0)	0(0.0)	1(6.7)
18개월	0(0.0)	0(0.0)	0(0.0)	0(0.0)
1.5~2년	1(14.3)	3(60.0)	1(33.3)	5(33.3)
2~3년	0(0.0)	1(20.0)	0(0.0)	1(6.7)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7(100)	5(100)	3(100)	15(100)

HANSUNG UNIVERSITY

〈표 15〉 기타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0(0.0)	0(0.0)	0(0.0)
6개월	0(0.0)	0(0.0)	0(0.0)	0(0.0)
7개월	0(0.0)	0(0.0)	0(0.0)	0(0.0)
8개월	0(0.0)	0(0.0)	2(40.0)	2(22.2)
9개월	0(0.0)	0(0.0)	0(0.0)	0(0.0)
10개월	0(0.0)	0(0.0)	0(0.0)	0(0.0)
11개월	0(0.0)	0(0.0)	1(20.0)	1(11.1)
12개월	0(0.0)	0(0.0)	0(0.0)	0(0.0)
13개월	0(0.0)	1(33.3)	0(0.0)	1(11.1)
14개월	1(100)	1(33.3)	0(0.0)	2(22.2)
15개월	0(0.0)	0(0.0)	0(0.0)	0(0.0)
16개월	0(0.0)	0(0.0)	0(0.0)	0(0.0)
17개월	0(0.0)	0(0.0)	0(0.0)	0(0.0)
18개월	0(0.0)	0(0.0)	0(0.0)	0(0.0)
1.5~2년	0(0.0)	1(33.3)	1(20.0)	2(22.2)
2~3년	0(0.0)	0(0.0)	1(20.0)	1(11.1)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1(100)	3(100)	5(100)	9(100)

HANSUNG UNIVERSITY

〈표 16〉 절단·베임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0(0.0)	0(0.0)	0(0.0)
6개월	0(0.0)	0(0.0)	0(0.0)	0(0.0)
7개월	1(50.0)	0(0.0)	0(0.0)	1(25.0)
8개월	0(0.0)	0(0.0)	1(50.0)	1(25.0)
9개월	0(0.0)	0(0.0)	0(0.0)	0(0.0)
10개월	0(0.0)	0(0.0)	0(0.0)	0(0.0)
11개월	1(50.0)	0(0.0)	0(0.0)	1(25.0)
12개월	0(0.0)	0(0.0)	0(0.0)	0(0.0)
13개월	0(0.0)	0(0.0)	0(0.0)	0(0.0)
14개월	0(0.0)	0(0.0)	0(0.0)	0(0.0)
15개월	0(0.0)	0(0.0)	0(0.0)	0(0.0)
16개월	0(0.0)	0(0.0)	0(0.0)	0(0.0)
17개월	0(0.0)	0(0.0)	0(0.0)	0(0.0)
18개월	0(0.0)	0(0.0)	1(50.0)	1(25.0)
1.5~2년	0(0.0)	0(0.0)	0(0.0)	0(0.0)
2~3년	0(0.0)	0(0.0)	0(0.0)	0(0.0)
3년 이상	0(0.0)	0(0.0)	0(0.0)	0(0.0)
합계	2(100)	0(100)	2(100)	4(100)

HANSUNG UNIVERSITY

〈표 17〉 미상 업종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제조업	건설업	그 외 산업	계
3개월 이하	0(0.0)	0(0.0)	0(0.0)	0(0.0)
4개월	0(0.0)	0(0.0)	0(0.0)	0(0.0)
5개월	0(0.0)	0(0.0)	0(0.0)	0(0.0)
6개월	0(0.0)	0(0.0)	0(0.0)	0(0.0)
7개월	0(0.0)	0(0.0)	0(0.0)	0(0.0)
8개월	0(0.0)	0(0.0)	0(0.0)	0(0.0)
9개월	0(0.0)	0(0.0)	0(0.0)	0(0.0)
10개월	0(0.0)	0(0.0)	0(0.0)	0(0.0)
11개월	0(0.0)	0(0.0)	0(0.0)	0(0.0)
12개월	0(0.0)	2(28.6)	0(0.0)	2(18.2)
13개월	0(0.0)	0(0.0)	1(50.0)	1(9.1)
14개월	1(50.0)	0(0.0)	0(0.0)	1(9.1)
15개월	0(0.0)	1(14.3)	0(0.0)	1(9.1)
16개월	0(0.0)	0(0.0)	1(50.0)	1(9.1)
17개월	0(0.0)	0(0.0)	0(0.0)	0(0.0)
18개월	0(0.0)	0(0.0)	0(0.0)	0(0.0)
1.5~2년	0(0.0)	2(28.6)	0(0.0)	2(18.2)
2~3년	0(0.0)	0(0.0)	0(0.0)	0(0.0)
3년 이상	0(0.0)	1(14.3)	0(0.0)	1(9.1)
기간 미상	1(50.0)	1(14.3)	-	2(18.2)
합계	2(100)	7(100)	2(100)	11(100)

사망자 수별·폭발·파열 여부별 처리기간 분포

아래는 사망사건의 처리기간을 사망자 수와 폭발·파열 여부에 따라 나눈 분포이다. 본문 제3장 제5절에서 두 특성이 겹치는 사건의 수를 언급한 근거 자료이다.

〈표 18〉 사망자 수별·폭발·파열 여부별 인지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처리기간	1명·폭발·파열	1명·그 외 유형	둘 이상·폭발·파열	둘 이상·그 외 유형	계
3개월 이하	0(0.0)	4(0.2)	0(0.0)	0(0.0)	4(0.2)
4개월	0(0.0)	11(0.7)	0(0.0)	0(0.0)	11(0.6)
5개월	0(0.0)	33(2.0)	1(5.3)	4(3.9)	38(2.0)
6개월	0(0.0)	71(4.2)	0(0.0)	3(2.9)	74(4.0)
7개월	3(7.0)	118(7.0)	1(5.3)	7(6.8)	129(6.9)
8개월	2(4.7)	178(10.5)	2(10.5)	8(7.8)	190(10.2)
9개월	2(4.7)	174(10.3)	3(15.8)	8(7.8)	187(10.1)
10개월	3(7.0)	179(10.6)	2(10.5)	3(2.9)	187(10.1)
11개월	3(7.0)	176(10.4)	1(5.3)	13(12.6)	193(10.4)
12개월	1(2.3)	152(9.0)	0(0.0)	4(3.9)	157(8.5)
13개월	6(14.0)	102(6.0)	0(0.0)	5(4.9)	113(6.1)
14개월	2(4.7)	103(6.1)	1(5.3)	3(2.9)	109(5.9)
15개월	2(4.7)	59(3.5)	1(5.3)	6(5.8)	68(3.7)
16개월	4(9.3)	59(3.5)	1(5.3)	4(3.9)	68(3.7)
17개월	1(2.3)	39(2.3)	1(5.3)	1(1.0)	42(2.3)
18개월	1(2.3)	46(2.7)	1(5.3)	3(2.9)	51(2.7)
1.5~2년	10(23.3)	132(7.8)	1(5.3)	16(15.5)	159(8.6)
2~3년	3(7.0)	46(2.7)	2(10.5)	13(12.6)	64(3.4)
3년 이상	0(0.0)	10(0.6)	1(5.3)	2(1.9)	13(0.7)
기간 미상	–	2	–	–	2
합계	**43**	**1,694**	**19**	**103**	**1,859**

ABSTRACT

An Analysis of the Duration from Detection to First-Instance Judg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ases

Lim, Han-Kyu

Major in Industrial Hygiene Engineering

Dep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time required for the judicial processing of criminal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from the initial recognition of an offense to the first-instance court judgment. The objective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processing periods and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enforcement. A total of 2,587 first-instance criminal judgment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ublished on the Korean Court Case Information Portal between 2013 and 2019,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ecause the exact date of offense recognition was not explicitly recorded in the judgments,

the date of the accident or government inspection was used as a proxy for the starting point of judicial processing.

Among the 2,531 cases for which the processing period could be determined, the median processing time from offense recognition to the first-instance judgment was approximately 10.5 months. About 61% of the cases were concluded within one year, 94% within two years, while approximately 6% required more than two years. Fatal accident cases accounted for 1,859 cases, injury cases for 268 cases, and inspection-related cases for 460 cases. Injury cases showed the longest median processing period (approximately 15 months), followed by fatal accident cases (10.5 months) and inspection-related cases (9 months). However, little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eriod between indictment and the first-instance judgment, suggesting that the observed differences primarily originated during the pre-indictment stage, including accid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For fatal accident cases, the processing period showed little variation across industrial sectors such as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However, explosion-related accidents and cases involving multiple fatalities required substantially longer processing periods than other accident types. In addition, the judicial processing period for fatal accident cas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the study period. While the duration from court filing to the first-instance judgment remained relatively stable, the period from accident occurrence to indictment became progressively longer, indicating that most of the increase occurred before the trial stage.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 that judicial processing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s requires considerably longer than the statutory investigation period and the actual time needed for accident investigation. Considering that most first-instance judgments resulted in relatively small monetary fines and that little additional fact-finding was observed during the

trial stag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judicial process warrant careful reconsideration.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of judicial processing perio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s in Korea and offers evidence that ma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timeliness and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enforcement.

【Key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Judicial Processing Period, First-Instance Judg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ory Policy

HANSUNG UNIVERSITY